



제2929호 2023. 12. 29.(금)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 조례 제5422호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전라북도 조례 제5423호 전라북도 응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3
○ 전라북도 조례 제5424호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	5
○ 전라북도 조례 제5425호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8
○ 전라북도 조례 제5426호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11
○ 전라북도 조례 제5427호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14
○ 전라북도 조례 제5428호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	16
○ 전라북도 조례 제5429호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60
○ 전라북도 조례 제5430호 전라북도 상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 전라북도 조례 제5431호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 전라북도 조례 제5432호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70
○ 전라북도 조례 제5433호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2
○ 전라북도 조례 제5434호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 전라북도 조례 제543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	78
○ 전라북도 조례 제5436호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 전라북도 조례 제5437호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 전라북도 조례 제5438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규 칙

○ 전라북도 규칙 제3230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1
○ 전라북도 규칙 제3231호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1
○ 전라북도 규칙 제3232호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2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2023-380호 금암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114
○ 전라북도 고시 2023-381호 덕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115
○ 전라북도 고시 2023-382호 이룡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116
○ 전라북도 고시 2023-383호 황금봉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117
○ 전라북도 고시 2023-384호 풍산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18
○ 전라북도 고시 2023-385호 천원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119

○ 전라북도 고시 2023-386호 쌍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120
○ 전라북도 고시 2023-387호 화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122
○ 전라북도 고시 2023-388호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123
○ 전라북도 고시 2023-389호 산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46
○ 전라북도 고시 2023-390호 대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47
○ 전라북도 고시 2023-391호 오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48
○ 전라북도 고시 2023-392호 백운3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49
○ 전라북도 고시 2023-393호 상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50
○ 전라북도 고시 2023-394호 전라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변경(6차) 고시	163
○ 전라북도 고시 2023-396호 고창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67
○ 전라북도 고시 2023-397호 봉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70
○ 전라북도 고시 2023-398호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73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71호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6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72호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9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2027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195
○ 전라북도 공고 제2023-2031호 2024년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산림문화·교육분야) 공모계획 공고	196
○ 전라북도 공고 제2023-2036호 비영리민간단체 단체명칭 변경 등록공고	208
○ 전라북도 공고 제2023-2046호 도로공사 시행(변경) 허가 내용 공고	209

시 군

○ 군산시 공고 제2023-265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6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210	
○ 익산시 고시 제2023-235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3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12
○ 익산시 고시 제2023-237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14
○ 익산시 공고 제2023-3399호 지방도 제723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216
○ 남원시 고시 제2023-193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20
○ 남원시 고시 제2023-195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22
○ 완주군 공고 제2023-2111호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완주 축구메카)사업 공사완료 공고	224

기 타

○ 전라북도 전주완산소방서 공고 제2023-0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225
○ 남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189호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 공고	226
○ 이리마한초등학교 공고 제2023-15호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 공고	229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22호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람으로 구성한다”를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23호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에 관한 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 전라북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웅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전주부성으로 진격하는 왜군에 맞서 고평재와 소양평에서 벌여졌던 전투를 말한다.

2. “이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왜군에 맞서 배티재에서 벌여졌던 전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이하 “웅치·이치 전투”라 한다)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전라북도민들이 이를 널리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선양사업 지원) 도지사는 웅치·이치 전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웅치·이치 전투 전적지 발굴 및 조사
2. 웅치·이치 전투 전적지 보존 및 정비
3. 웅치·이치 전투의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학술 세미나
4. 웅치·이치 전투 희생자 추모사업

5. 그 밖에 웅치·이치 전투의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24호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민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백제역사문화권”이란 후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백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조명하기 위하여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연구·조사와 발굴·복원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백제역사문화권의 복원·정비 방향과 목표 및 기본 정책
2.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조사 및 발굴·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후백제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문화재청이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후백제역사문화권에 속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후백제역사문화 연구) ① 도지사는 시·군과 연계·협력하여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을 발굴·보전하고, 후백제역사문화를 조사·연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유적의 발굴·보전 및 후백제역사문화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체계적·과학적 복원 및 정비·활용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후백제역사문화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조사 등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후백제의 역사 및 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임원 또는 전문가

3.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후백제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조사·연구 방안에 관한 사항

2. 후백제역사문화권에 관한 당면 현안 자문 및 정책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

3. 후백제역사문화권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문결과의 활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25호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내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주택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란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증료 지원)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② 그 밖에 보증료 지원 범위,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

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3.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 서류충족 여부

③ 보증료는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26호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주거빈곤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북도 아동주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이 법 제6조 및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3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2. 임차료·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

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

6. 위기상황(「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

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3. 제9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

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전라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 주거기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 주거기준」 범위에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규에서 주거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관·법인·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홍보를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27호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

3. “사후관리지원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게 하도록 2년마다 전라북도 도시재생 사후관리지원계획(이하 “사후관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상 지역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지원사업 전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제4조제2항제2호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사업 지원)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개보수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준용)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전라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28호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5.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6.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용도의 시설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다. 정비대상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인 지역

마. 대상구역 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바.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 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③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8조(안전진단 비용처리 절차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 ④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획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조합설립 가능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 ② 제1항에 따른 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제13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실태와 자금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⑦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전에 위원 자신이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힌 때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
-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

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서류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비용 사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할 것) 현황과 증빙서류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할 것)
-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시장·군수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7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의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

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9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20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 ①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 ② 영 제39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에 따른다.

제2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2.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때
3. 영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변경하는 때
4. 법 제57조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인·허가 등을 받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5조(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

-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시·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7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의 특례) 시장·군수는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안의 연면적 합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9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로부터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중전의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말한다)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

법」이 제정·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순환용주택 이주 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1,000호를 초과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시·군 주택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이 조례 시행 이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인가된 정비구역을 말한다)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3,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 자료
2.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경우,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및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3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군수가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군수가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일주택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3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5조(국·공유지의 관리처분 등) 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매각 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③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법」, 「지방재정법」 및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장 감독 등

제36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6. 법 제74조제3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 승인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와 공사완료 고시
8. 법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변경)과 해제 및 고시
9.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및 고시

② 법 제111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사업 시행 실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7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38조(설치)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9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 자신이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위원의 해촉) 시장·군수는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힌 때
4. 위원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3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4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45조(조정 신청 및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50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해당 시·군의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52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거나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그 밖에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53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54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5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가·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장 보칙

제56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 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 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와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와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57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 ②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와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 ③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 ④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⑤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

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준공연도	5층 이상 공동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
1983년12.31.이전	20년	20년
1984년	22년	21년
1985년	24년	22년
1986년	26년	23년
1987년	28년	24년
1988년	30년	25년
1989년		26년
1990년		27년
1991년		28년
1992년		29년
1993년 1.1. 이후		30년

[별표 2]

감정평가업법인등 선정심사기준(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1. 감정평가업법인등 선정심사기준표(총괄)

구분	항목 및 점수	평가 기준				
감정 평가 법인등 의 규모 (20)	① 평가 수행 사무소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20점)	구분	5인 이상	4인 이상	3인 이상	2인 이하
		평점 (20)	20	18	16	14
수행 능력 및 실적 (30)	②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최근5년) (30점)	구분	7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하
		평 점 (30)	30	27	23	20
기 참 여 규 모 (30)	③ 기참여평가액 (최근5년)(15점)	구분	500억 이하	700억 미만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평 점 (15)	15	13	11	9
	④ 기참여횟수 (최근5년)(15점)	구분	1회 이하	2회	3회	4회 이상
		평 점 (15)	15	13	11	7
법규 준수 등 이행도 (20)	⑤ 행정처분 (최근5년) (20점)	구분	없음	2점 이하	3점 ~ 4점	5점 이상
		평 점 (20)	20	18	16	12
		※ 5년간 징계처분 점수 : (자격취소*3)점+(자격등록취소*2)점+(자격정지*1)점				
합 계		100				

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기준표(항목별 세부)

①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평가지표	소속평가사의 수	가중치	20%		
지표정의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소속 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해당 권역(전북)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4인 이상, 3인 이상, 2인 이하으로 구분한다.				
	구분	5인 이상	4인 이상	3인 이상	2인 이하
	평점 (20)	20	18	16	14

② 감정평가업법인등의 실적(최근 5년)

평가지표	해당업무 평가건수		가중치	30%	
지표정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해당업무에 대한 처리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업무의 평가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① 해당 업무의 평가건수로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구분	7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하
	평점 (30)	30	27	23	20
세부 평가기준	① 평가서 기준은 모집공고일 직전 분기까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발행한 건수로 한다. (예, 공고일이 해당하는 분기의 전분기까지 실적)				
	② 해당업무 처리실적이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정비사업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을 말하며, 최근 5년간 해당 권역(전북) 감정평가법인등의 전체의 평가실적 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기 참여 평가액(최근 5년)

평가지표	기 참여 평가액	가중치	15%										
지표정의	수입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근 5년간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소규모 감정평가법인등의 기회 부여												
지표산식	<div>① 수입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div> <table><tr><td>구분</td><td>500억 이하</td><td>700억 미만</td><td>1,000억 미만</td><td>1,000억 이상</td></tr><tr><td>평점 (15)</td><td>15</td><td>13</td><td>11</td><td>9</td></tr></table> <div>※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발급한 해당 권역(전북) 평가액</div>			구분	500억 이하	700억 미만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평점 (15)	15	13	11	9
구분	500억 이하	700억 미만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평점 (15)	15	13	11	9									

④ 기 참여 횟수(최근 5년)

평가지표	기 참여 횟수	가중치	15%										
지표정의	수입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근 5년간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소규모 감정평가법인등의 기회 부여												
지표산식	<div>① 수입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div> <table><tr><td>구분</td><td>1회 이하</td><td>2회</td><td>3회</td><td>4회 이상</td></tr><tr><td>평점 (15)</td><td>15</td><td>13</td><td>11</td><td>7</td></tr></table> <div>※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발급한 해당 권역(전북) 참여 횟수</div>			구분	1회 이하	2회	3회	4회 이상	평점 (15)	15	13	11	7
구분	1회 이하	2회	3회	4회 이상									
평점 (15)	15	13	11	7									

⑤ 법규 준수 등 이행도 - 행정처분

평가지표	행정처분 횟수	가중치	20%										
지표정의	감정평가 관련 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속 감정평가사의 징계 단계별 계수(자격취소 3점, 자격등록취소 2점, 자격 정지 1점)에 횟수를 곱한 값을 누계한 값의 합산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누계 점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div>① 징계 누계점수 합산 값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div> <table><tr><td>구분</td><td>없음</td><td>2점 이하</td><td>3점 ~ 4점</td><td>5점 이상</td></tr><tr><td>평점 (20)</td><td>20</td><td>18</td><td>16</td><td>12</td></tr></table>			구분	없음	2점 이하	3점 ~ 4점	5점 이상	평점 (20)	20	18	16	12
구분	없음	2점 이하	3점 ~ 4점	5점 이상									
평점 (20)	20	18	16	12									
세부 평가기준	<div>① 해당 권역(전북) 소속 감정평가사 개인별 5년간 누계점수 산출 ※ $\Sigma[(\text{자격취소} \times 3) \text{점} + (\text{자격등록취소} \times 2) \text{점} + (\text{자격정지} \times 1) \text{점}]$</div> <div>② 해당 권역(전북) 소속 감정평가사의 징계점수 누계 점수를 합산 ※ Σ소속 감정평가사 개인별 징계 누계점수</div>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1.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입안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또는 기정·변경 으로 구분)						

나. 입안 제안 사유(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

- 1)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2.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가. 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토 지 현 황	구 분	계	사유지	국 · 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면 적 (㎡)												
	필지수												
건축물 현 황	구 분	계	허 가 유 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비 고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 계	유허가	무허가	소 계	유허가	무허가			
	동 수											호수는 공동주 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호 수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거 주 가 구			거 주 인 구			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토지· 건축 물 소유 자	토 지 소유 자	건축물 소유자	지 상 자 권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다음의 내역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수/ha)	구역면적 (㎡)	건축물 호수				비 고
		계	단독주택(동)	공동주택(호)	기타건축물(동)	

2)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	비 고

3) 과소필지 등 현황

구 분	구역안의 대상 총토지		과소필지 등		과소필지 비율 (%)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과소필지					
부정형					
세장형					

4) 재해(상습침수·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여부

5)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구 분		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 <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계	구 조 상 불량동수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기 타
구 조 별	합 계					
	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존 치 기 간 별	합 계					
	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허 가 별	합 계					
	유 허 가 무 허 가					

다.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라. 현황전경사진

마. 관계도면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 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관련)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도 로					
	공 원					
	녹 지					
획 지	소 계					
	획 지 1					
	획 지 2					
	획 지 3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주거 지역	소 계					
○○ 지역	소 계					
○○ 지역	소 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 공원·녹지 등

구 분	시설명	시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주	
계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에 의함 - 주택규모별 건립세대수 기재 (임대주택 포함)							
	심의완화 사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재난방지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자.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필요시)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밀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희가	무허가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합 계										
60㎡ 이하	소계									
	30㎡이하									
	30㎡초과 ~ 50㎡이하									
	50㎡초과 ~ 60㎡이하									
60㎡초과 ~ 85㎡이하										
85㎡ 초과	소계									
	85㎡초과 ~ 135㎡이하									
	135㎡초과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 고
합 계						
60㎡ 이하	소 계					
	30㎡이하					
	30㎡초과 ~ 50㎡이하					
	50㎡초과 ~ 60㎡이하					
60㎡초과 ~ 85㎡이하						
85㎡ 초과	소 계					
	85㎡초과 ~ 135㎡이하					
	135㎡초과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연면적)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함.

파.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하. 환경성 검토결과

거.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연번	수종	직경	본수	활 용 계 획	비 고

너.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축척 1/5,000의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구역의 범위, 시행지구 및 건축부지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명기하고 토지용도별 시설별 명칭 기재, 도면작성 일자와 작성자의 직·성명 기재)

더. 용도지역 변경 전·후 도면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권리 내역	토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				
		()				
		()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명칭)			취소일자	
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중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청금액	(백만원)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

구역 위치			
구역 면적		m ²	구역 지정일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해산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해산 신청동의율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 사용비용 신청내역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3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 (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외 주 용 역 비	감정평가수수료				총전 감정평가비 등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건축설계				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세무·회계용역비				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안전진단비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기타외주용역비				상기 이외의 용역비
	계				
기 타 사 업 비	민원처리비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기타사업비				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계				
회 의 비	주민총회				총회의 소요비용
	추진위원회 및 조합				추진위원회 및 조합 회의비용
	계				
인 건 비	급 여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급여
		상근 위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급여
		직원			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
	퇴직금 및 예치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기타인건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복리후생비				상근직 식대 등
	계				
운 영 비	통 신 비				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여비교통비				재건축 유관기관 방문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보 험 료				
	도서인쇄비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품비				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위원장 및 조합장 등 업무추진비
	관 공 비				업무상 관공비 등
	수도광열비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등
	수 선 비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광고선전비				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지급수수료				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기타 비용				상기 이외의 운영비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조 합 원 명 부

정비사업 명칭

연번	조합원 번 호	조 합 원					권 리 내 역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주소	성 별	전 화 번 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

1. 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

위 치			
정비구역 면적	m ²	정비구역지정일	
용도지역·지구			
조합설립인가일		조합원수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사업 시행자	명 칭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전화:)	

2. 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 폐 율	%	용적률	%
세 대 수	세대 (분양 임대 기타)		
평형 및 세대수	m ² 형 세대, m ² 형 세대,	m ² 형 세대, m ² 형 세대,	m ² 형 세대, m ² 형 세대

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선정구분	업체명	계약(변경)일	계약(변경)금액	계약(과업)기간
공사	최초				~
	1차변경				~
	2차변경				~
용역	최초				
	1차변경				
	2차변경				
물품구매					
제조					
기타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비 내용	발생이자	이자발생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29호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전라북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품목
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지원한도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농생명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북도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군 농업 관련 부서장
4.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점검)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시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제12조(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30호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제3조 각 호의 종류를”을 “문장, 브랜드 슬로건, 동·식물 등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상징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통합브랜드”를 “문장·철인·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장·철인·휘장”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한다.

제4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도의 상징물”을 “상징물”로, “공청회 및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 의결을”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이하 “통합브랜드”라 한다.)”을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하는 상징물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이행
2.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브랜드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도민참여 방안
4.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브랜드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를”을 “전북자치도를”로, “도와”를 “전북자치도와”로 한다.

2. 도지사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인가·면허 문서

3.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공공시설 및 전북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
자

제7조제1항 중 “도와 도”를 “전북자치도 본청과 전북자치도”로, “청사에는 연
중 도기를”을 “청사에 연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체의 행사장이나
도”를 “전체를 위한 행사 또는 전북자치도”로, “행사장에는”을 “행사의 행사
장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통합브랜드를”을 “상징물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의 통합브랜드 사용)”
을 “(출자·출연기관 등의 상징물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에서”를 “전북자치도에서”로, “도 예산 등이 지원되었거나 도”를 “전북
자치도의 예산이 지원되었거나 전북자치도”로, “통합브랜드를”을 각각 “상징
물을”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장·철인·휘장

☐ 문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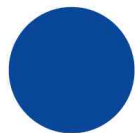
		
기본형	국문형(문장 + 로고타입)	영문형(문장 + 로고타입)

새 시대, 새 지평(New Horizon)

○ 문장 의미

- 전북의 역사를 간직한 ‘땅’과 새만금 ‘지평선’을 결합하여, 미래의 새 지평을 열어갈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서의 전북특별자치도를 표현
-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이 피어 오르는 전북을 이미지화

○ 색상



전북 블루
CMYK_C100 / M80
PANTONE_287 C



전북 그린
CMYK_C75 / Y75
PANTONE_2414 C

☐ 철인☐ 휘장

※ 문장·철인·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브랜드 슬로건

□ 형태



□ 의미

○ 미래가 전북으로 통한다

-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 의 이미지를 통해 **전북의 새 변화**를 알리고, 특별한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열어가는 **전북의 긍지와 희망**을 표현
- 새롭게 비상하는 전북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서체의 획을 사선형으로 연결,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북의 기상을 전달
- 전북의 **전통 및 역사적 정체성**을 빨강(전북 레드)으로, 맛과 멋과 **문화적 깊이**를 노랑(전북 옐로우)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 전진 기지**로서의 위상을 파랑(전북 스카이 블루)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비전**을 녹색(전북 라이트 그린)으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무궁한 잠재력**을 진청색(전북 다크 블루)에 담아 **완전한 미래로** 나아가는 전북 이미지 구현

□ 색상



전북 다크 블루
CMYK_C100 / M100 / K20
PANTONE_280 C



전북 옐로우
CMYK_M30 / Y100
PANTONE_130 C



전북 스카이 블루
CMYK_C100 / M30
PANTONE_3005 C



전북 라이트 그린
CMYK_C50 / Y100
PANTONE_368 C



전북 레드
CMYK_M100 / Y90 / K10
PANTONE_186 C

[별표 3]

도 기



□ 도기규격(가로×세로)

- 도기 깃면의 규격 및 마크·로고(글씨) 등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12.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 교육감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31호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위축할 수 있다”를 “위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회”를 “5회”로 한다.

제7조 중 “영양사의”를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생략)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② (생략)	제4조(계획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방사능 관련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③ ----- ---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 안전성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 안전성 검사) ① ----- ----- 5회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 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연수) -----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 -----.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12.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32호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다음 각 호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조리사·조리원), 위생원 등을 말한다.

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 내용·기준

2. 지원 대상 및 절차

3. 그 밖에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폐암검진 주기) ① 폐암검진 주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암검진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 폐암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추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고, 폐암(매우)의심 소견자에게는 정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효율적인 실행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12.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33호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특수교육 연수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홍보
2.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단 및 평가
3.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배치 및 관련 상담
4. 특수교육대상 학생 정보 관리(선정, 배치, 재배치, 유예, 면제 등)
5.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지원
6.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7.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방과후학교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8.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9.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 및 전환교육 지원, 관련 학부모교육
10.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11.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특수교육실태조사, 특수교육통계,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등에 대한 지원
1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인권침해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13.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교육 지원
14. 특수교육 연수 및 교수·활동의 지원
1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지원
16.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
17.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교육지원청의 장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센터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특수교육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각각의 센터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 성과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12.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34호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를 “유지·관리와 시설·환경개선”으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위생 건강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교육감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를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을”로, “관리될 수 있도록”을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환경권이 보장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화장실에 관한 유지·관리와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 별표 규정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고 노후된 화장실을 개·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 및 물 절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자동 물내림 장치 설치
2.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
3.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칸 사이 하단부에 안심가림막 설치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속기관”을 각각 “교육감 및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금지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3항 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관리인 등”을 “관리인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속기관”을 각각 “교육감 및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4조 및 제6조”를 “제5조 및 제7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중 “소속기관”을 “교육감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유지·관리와 시설·환경개선-----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위생건강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을 -----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환경권이 보장되도록 ---.
<신설>	② 교육감은 화장실에 관한 유지·관리와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 별표 규정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고 노후된 화장실을 개·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 및 물 절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자동 물내림 장치 설치
	2.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
	3.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칸 사이 하단부에 안심가림막 설치
제4조 (생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불법촬영 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제6조(불법촬영 점검)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

의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 ①·② (생 략)

- ③ 제4조제3항제2호-----

-----.

제7조(관리인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

-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

-----.

- ③ 교육감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금지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제7조 현행 제6조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5조제3항제2호-----

-----.

제8조(관리인 지정 등)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

-----.

-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 제5조
및 제7조-----

--.

제9조(위탁관리) 교육감 및 소속기관-----

-----.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12. 13.)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3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동시에 완화시키는 미래세대이자 주체로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교육과정”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전환 과정에 경제·산업·사회 등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를 위한 지식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수·학습에 관한 계획과 방법을 말한다.
2. “탄소중립 기본교육”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과 완화를 바탕으로 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 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제4조 등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5조(탄소중립 기본교육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기본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탄소중립 기본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교육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
3. 탄소중립 기본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교직원과 학생의 탄소중립 기본교육에 대한 소양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조성 방안
5.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①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에 관하여 산업의 구조적 전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등에 대한 주요내용 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기본교육과 관련된 학교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시행)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탄소중립 기본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12.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36호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각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
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전단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교육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교육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교육청</u>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하여 <u>전라북도교육청</u>(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u>전라북도교육청</u>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p> <p>제4조(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교육청</u>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제5조(구성) ① (생략)</p> <p>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전라북도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1. <u>전라북도의회</u>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p>	<p><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 -----.</p> <p>제2조(정의) ----- ----- 1. ----- -----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p> <p>2. (현행과 같음)</p> <p>3.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 -----.</p> <p>제4조(설치·기능) -----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p> <p>1.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p>

2. (생략)

③ (생략)

제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교육청 -----.

-----.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12.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37호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안전지킴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안전지킴이””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배움터지킴이”를 각각 “학교안전지킴이”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안전지킴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 중 “배움터지킴이”를 각각 “학교안전지킴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의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안전지킴이”로 한다.

제5조 중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안전지킴이”로 한다.

제6조 중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안전지킴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배움터지킴이”를 각각 “학교안전지킴이”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안전지킴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안전지킴이”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배움터지킴이”를 각각 “학교안전지킴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배움터지킴이”를 각각 “학교안전지킴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의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안전지킴이”로 한다.

제11조 중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안전지킴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u>배움터지킴이</u>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배움터지킴이</u>”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에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u>배움터지킴이</u>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u>배움터지킴이</u>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p> <p>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u>배움터지킴이</u>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u>배움터지킴이</u>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p> <p>2. <u>배움터지킴이</u>의 역할 및 활동</p> <p>3. <u>배움터지킴이</u>의 자격 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p> <p>4. <u>배움터지킴이</u> 활동실비 지원</p> <p>5. 그 밖에 <u>배움터지킴이</u>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u>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학교안전지킴이</u>----- ----- ----- -.</p> <p>제2조(정의) ----- ----- ----- 1. “<u>학교안전지킴이</u>” ----- ----- ----- ----- ----- 2. (현행과 같음)</p> <p>제3조(책무) ① ----- -- <u>학교안전지킴이</u>----- ----- ② ----- <u>학교안전지킴이</u>----- -----.</p> <p>제4조(기본계획) ① ----- <u>학교안전지킴이</u>를 ----- ----- ----- ----- 1. <u>학교안전지킴이</u>----- 2. <u>학교안전지킴이</u>----- 3. <u>학교안전지킴이</u>----- ----- 4. <u>학교안전지킴이</u>----- 5. ----- <u>학교안전지킴이</u>-----</p>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세부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배움터지킴이의 1일 운영시간은 등·하교시간,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7조(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촉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위촉의 제한 횟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학교의 장과 배움터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 4. (생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활동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교직원들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별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지원 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학교의

② ----- 학교안전지킴이-----
--.

제5조(실태조사) ----- 학교안전지킴이-----.

제6조(운영시간) 학교안전지킴이-----.

제7조(위촉 등) ① ----- 학교안전지킴이-----
-----.

② 학교안전지킴이-----.

③ ----- 학교안전지킴이-----.

제8조(활동범위) ① 학교안전지킴이 -----.

1. ~ 4. (현행과 같음)

② ----- 학교안전지킴이 -----.

제9조(활동보호) ① ----- 학교안전지킴이-----.

② ----- 학교안전지킴이-----.

③ ----- 학교안전지킴이-----.

제10조(지원) ① ----- 학교안전지킴이-----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생보호 성과가 우수한 배움터지킴이를 포상할 수 있다.

-----.

② ----- 학교안전지킴이-----
-----.
-----.

③ ----- 학교안전지킴이-----
-----.

제11조(포상) ----- 학교안전지킴이-----.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12.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조례 제5438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호의 “교육협력”을 “교육협력, 학교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정책국) (생략) 1. ~ 4. (생략) 5. <u>교육협력</u> 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6조의2(정책국)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교육협력, 학교운영위원회</u> 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국) (생략) 1. ~ 2. (생략) 3. <u>학사, 학교운영위원회</u> 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제7조(교육국)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삭제</u> 4. ~ 6. (현행과 같음)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규칙 제3230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7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조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조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제1호”를 “제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의2”를 “제11조의2”로 한다.

제17조 중 “제7조제3항제2호”를 “제8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의 관리·운용”을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의 관리·운용”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7조제3항제3호”를 “제8조제3항제1호”로 하고, “지역특화산업 자금”을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으로 한다.

제21조 중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을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용자승인 통보”를 제1항에서 규정한다.

① 도지사는 용자신청업체의 용자신청서 접수 후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업체, 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제4호”를 “제8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 중 “제10조의2”를 “제11조의2”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삭제한다.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기준(제8조 관련)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가. 제조업

- (1)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희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다.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1)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 (2)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또는 다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업종

2.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종 류	○ 시설투자자금
용자 내용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 사무실, 기숙사, 창고, 시험·연구시설, 전시·판매장, 전산망, 편의시설

구 분	지 원 내 용
융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원 이하 (지역특화품목 생산기업, 공동창고 건립자금은 30억원 이하) ※ 단, 한도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융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거치 5년 이내
융자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관리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이율

3. 소요자금 산정기준

- 가. 부지매입비는 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나.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다.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신청 가능)
 라. 매매에 의한 유희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마.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바.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4. 기타사항

지원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총 대출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의 지원기준(제20조 관련)

1. 지원대상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선정하여 공고하는 지역특화 산업, 지역 신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관련조합, 단체 또는 법인

2.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 원 내 용
융 자	○ 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종업원 등에 대한 대출
지 출	○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로서 집행
출연 또는 보조	○ 도지사가 민간단체에 위탁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로 출연 또는 보조 ○ 중소기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서 출연 또는 보조

3. 융자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종 류	○ 시설투자자금
융자금리	○ 기금 관리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이율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융자비용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단,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은 20억원 이내)

4. 기타사항

지원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총 대출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제23조 관련)

1. 지원대상

- 가.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 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5-1)
- 라.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제조업)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바.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1)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 (2)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사.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또는 다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업종
- 아. 재해피해기업 및 재해피해기업의 협력기업

2. 지원내용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3. 지원조건

- 가.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 단, 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등 우대기업*은 업체당 5억원 * 우대기업은 따로 정하여 공고
 - 연간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지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지원
- 나. 재해피해기업 및 재해피해기업의 협력기업은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별도지원
- 다. 평가기준에서 50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연간매출액의 범위 내로 지원결정)
 - 단, 심사 기준 적용

4. 융자조건

가.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나. 융자금리 : 변동금리(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5. 기타사항

지원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총 대출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5-1]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대 상 업 종
4931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9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취급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69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37011	하수 처리업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9511	일반기계 수리업
95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역산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정리번호		관리번호		산업분류 번호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		○ 시설투자		세부사업명 :			
업체명		설립일		대표 자	한글 :		
법인등기번호					한자 :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자 : 세무서장)				생년월일 :		
본사	(우편번호)	주소 :		전화(FAX)		☐ 자가 ☐ 임차	
	(우편번호)	주소 :		전화(FAX)		☐ 자가 ☐ 임차	
공장	면적	대지 ㎡ 공장건축/건물 ㎡	: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지역, 기타지역()		
연락처	담당자		휴대 폰	전화(FAX)			
기업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E-mail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금액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천불		
소요자금	백만원			신청 액	계 백만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부지(공장)매입		백만원
중소기업진 흥공단 자금 이용현황	시설 : 백만원 운 전 : 백만원				건축비		백만원
					기계구입		백만원
벤처기업번호		부채비율		건축허가번호	()시·군·구 No.		
대출희망은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 방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담당자	직위 :	대출가능()	보증기관 협의내용	보증기금 보증재단 (담당 :)		보증가능() 보증불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			
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경영안정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 (전화 팩스)
2. 소 재 지 : (담당자 HP)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4. 용자신청액 :
5. 자 금 용 도 : 원료구입, 기계보수, 임금 지불, 기타()
6. 업체현황

업 종			공장규모	대 지 : m ² 건 물 : 동 m ²
생 산	주 생산품 : 연간생산액 : 백만원		종 업 원	생 산 직 : 명 사 무 직 : 명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 방 법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위와 같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불 입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6-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허가증
 -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제조업소, 수리점, 사무소, 출판사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소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은 건축물관리
대장 사본(임대업체는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포함)
3.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1부)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4.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5.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재해기업과의 거래내역(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시)
6. 경영안정자금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사본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 1부(최근 3개월 기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
(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수출실적 등)
- ※ 제출 증빙서류로 평가
7.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1부
8. 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기업 관련 동의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규칙 제3231호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위원장은 국악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라북도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라북도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총무팀장,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 창극단장, 관현악단장, 무용단장”을 “원장, 총무팀장,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 창극단 예술감독, 관현악단 예술감독, 무용단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예술단장(이하 “각 실·단장”)을 “예술감독(이하 “각 실장·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단장”을 “실장·예술감독”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예술3단장”을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단장”을 “실장·예술감독”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장”을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예술단장”을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무시간내”를 “근무시간 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출강”을 “출강에 한함”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국단위”를 “전국 단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악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별지 4호 서식”을

“별지 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월3회”를 “월 3회”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해외공연, 특별기획행사, 대회출전, 대회심사 출연시는 본인의 연차 사용 가능 범위에서 별도 심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1회”를 “주 1회”로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장 및 예술감독에 한하여 경력환산기준 확정기준에 따라 기존 휴가일수에 추가 확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되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영유아보육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실·단장”을 “실장·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실·단장”을 각각 “실장·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후단 중 “최하점수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서면 개별 통지한다.”를 “모든 상임단원에게 개별 문자로 통지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실·단장”을 “실장·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내지 제12조의”를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로 한다.

제44조제2항제3호 중 “실·단장”을 “실장·예술감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8, 별지 3, 별지 4, 별지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원의 종류 및 정원

구 분	정 원	종류 및 정원		비고
계	140인			
교육학예실	29인	가. 실장 나. 주간교육주임 다. 야간교육주임 라. 교무수 마. 학예연구팀장 바. 연구사 사. 연구원	1인 1인 1인 22인 1인 2인 1인	실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공연기획실	11인	가. 실장 나. 공연기획팀장 다. 공연지원팀장 라. 단원	1인 1인 1인 8인	실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창극단	27인	가. 예술감독 나. 지도위원 다. 수석 라. 부수석 마. 총무 바. 의상(소품)·악기 사. 단원	1인 1인 4인 5인 1인 1인 14인	예술감독:계약직 (연봉제 적용)
관현악단	45인	가. 예술감독 나. 악장 다. 수석 라. 부수석 마. 총무 바. 의상·악기 사. 악보 아. 단원	1인 1인 7인 7인 1인 1인 1인 26인	예술감독:계약직 (연봉제 적용)
무용단	28인	가. 예술감독 나. 지도위원 다. 수석 라. 부수석 마. 총무 바. 의상(소품)·악기 사. 단원	1인 1인 4인 5인 1인 1인 15인	예술감독:계약직 (연봉제 적용)

[별표 3]

단원 및 강사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실 장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2. 전국 규모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자 3. 관련분야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5. 6급상당 이상으로서 교수경력 5년 이상인 자
교 수	<p>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해당분야 교육 또는 연주(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3.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자
강 사	<p>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해당분야 교육 또는 연주(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3.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장관상의 상을 수상한 자
팀 장 연구원 연구사	<p>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관련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국악에 관한 연구와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실 장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단 원	<p>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명·음향 : 관련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또는 국가 공인자격 소지자 2. 무대·의상 : 관련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2 년이상 종사한 자 및 이에 상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홍보 : 전공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2년이상 종사한 자 4. 디자인 : 전공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또는 국가 공인자격증 소지자 5. 기 획 : 전공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2년이상 종사한 자 6. 기타 행정 단원 : 2년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행정능력이 인정되는 자
예술감독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2. 전국규모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자 3. 관련분야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창 극 단 관현악단 무 용 단	<p>채용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수, 강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2. 관련분야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3.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연주·교육활동 경력자 단, 재학생의 관련분야 활동 경력 인정 불가

[별표 4]

예술단 직책별 자격기준 및 업무역할

실단명	직 책	자 격 기 준	업 무 역 할
예 술 3 단	지도위원 악 장	각 단의 7년 이상 경력단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30%이내인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예술감독을 보좌하며, 예술감독의 승인을 받아 음악 및 작품 구성 (안무)등을 연습 지도·관리
	수 석	각 단의 5년 이상 경력단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30%이내인 사람 중에서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예술감독의 승인을 받아 각 담당분야의 연습을 지도·관리
	부 수 석	각 단의 3년 이상 경력단원으로서 종합평정 상위 50%이내인 사람 중에서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수석의 업무를 돕거나 대리하여 각 담당 분야의 연습을 지도·관리
	총 무	단원 중 경력 및 평정에 관계없이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예술감독의 승인을 받아 단 자체의 행정 사무업무 수행
	악기·악보· 의상(소품)	단원 중 경력 및 평정에 관계없이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예술감독의 승인을 받아 악기·악보·의상(소품)의 보관, 유지 등의 관리
공 연 기획실	팀 장 (6급상당)	3년이상 경력 직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35%이내인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실장을 보좌하며, 공연계획·프로그램 구성 등 공연기획, 공연인력·물품·장비 등 공연 지원
교 육 학예실	교 수 6급·9급상당	3년이상 경력 직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60%이내인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과목별 수업지도 및 수업용 악기 등 비품 관리
	교육주임 (주·야간)	교수 중에서 경력 및 평정에 관계없이 교수실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교육학예실장을 보좌하며, 연수 관련 행정 업무 수행
	학예연구 팀장	3년이상 경력 직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35%이내인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교육학예실장을 보좌하며, 국악의 전승·기록·보전에 관한 연구 수행

※ 관현악단의 경우 악기 분야(파트)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석 자격기준 중 상위30%의 비율을 악기 분야(파트)별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단원의 본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교육학예실	실 장	연봉제(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5호 상당)	
	교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9급상당	
	학예연구팀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7급상당	
	연구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상당	
	연구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9급상당	
공연기획실	실 장	연봉제(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5호 상당)	
	팀 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7급 상당	
	단 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9급상당	
예 술 단	창 극 단 관현악단 무 용 단	예술감독	연봉제(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5호상당)
		지도위원 악 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급상당
		수 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7급 상당
		부수석·총무·악기·악보·의상(소품) 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9급상당

[별 표 8]

직책수당 등 지급기준(제13조제2항·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공연수당
교육 학 예 실	실 장		150	150	100	
	교 수	교 육 주 임 (주 · 야 간)	100	해당직급 수당	해당직급 수당	
		5·6급상당		100	80	
		7·8급상당		50	80	
	학 예 연구팀	팀 장	100	100	80	
		연구사		100	80	
		연구원		50	80	
	공연기획실		실 장	150	100	
팀 장			100	50	80	
단 원				50	80	
예 술 단	창 극 단	예술감독	150	100	150	
		예술고문	120	100	120	
		지도위원 악 장	100	100	80	
	관현악단	수 석	50	50	80	
		부수석	30	50	80	
	무 용 단	총 무 악기, 악보 의상(소품)	100	50	80	
		단 원		50	80	

※ 주연(협연) : 작품의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최대 5인 이하의 단원을
단체 예술감독이 정하며, 원장이 승인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응 시 원 서

본인은 전라북도립국악원 (단 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우)	전라북도 수입증지 붙이는 곳 5,000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전라북도립국악원 (단 원) 전국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전라북도립국악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뒤 쪽)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응시분야: 응시하려는 모집분야와 직책을 기재합니다.
가. 실장·예술감독: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 창극단 예술감독, 무용단 예술감독, 관현악단 예술감독
나. 상임단원: 교육학예실, 공연기획실,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의 단원 등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 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5. 전라북도 수입증지: 전라북도 도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붙입니다. 실장·예술감독 지원자는 1만원, 단원 지원자는 5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사적출연 동의」 허가원

소 속 :

성 명 :

위 사람은 아래와 같이 (출강, 대회출전, 대회심사, 공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행 사 명 :

출 연 일 시	주 최	장 소	출연내용	근무상황
. . . ~ . . . (: ~ :)				연 차 조 퇴 외 출
조퇴시간 : 외출시간 :				

※ 조퇴는 출발시간을 정확히 기재 바람.

(첨부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실장·예술감독

담 당 자	운영팀장	원 장	결 재

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업 무 일 지

_____ 단

_____ 년 월 일 요일

	총 무	지도위원 학 장	예술감독
결 재			

연 습 내 용	오 전		특이사항
	오 후		특이사항
공 연 및 행 사	공 연		특이사항
	교 육		
	기 타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 규칙 제3232호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1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술단 구성(제2조 관련)

구 분	직 위	정 원
단 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간 사	전라북도립국악원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12인이내(위원장포함)
교향악단	지휘자	1인
	관리교사(악보계원)	1인
	지도교사	20인이내
	어린이단원	70인이내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1인
	관리교사(악보계원)	1인
	지도교사	20인이내
	어린이단원	60인이내

※ 필요시 예비단원 및 견습생 등을 정원 외 모집가능

전라북도 고시 제2023 - 380호

금암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금암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금암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 일원
3. 사업목적 : 노후·파손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재정비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 환경 개선
4. 수혜면적 : 76ha
5. 사업개요 : 용수로 8조 3,982m, 배수로 2조 859m
6.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7. 총사업비 : 1,976백만원(도비 1,778, 시군비 198)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전화 063-440-5713)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3 - 381호

덕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서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사전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덕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덕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사전리 일원
3. 사업목적 : 노후·파손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재정비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 환경 개선
4. 수혜면적 : 76ha
5. 사업개요 : 용수로 6조 2,963m, 배수로 3조 625m
6.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7. 총사업비 : 1,976백만원(도비 1,778, 시군비 198)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전화 063-350-7072)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3 - 382호

이룡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 지사에서 장수군 산서면 이룡리, 쌍계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이룡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이룡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장수군 산서면 이룡리, 쌍계리
3. 사업목적 : 노후 파손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재정비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86ha
5. 사업개요 : 용수로 7조 2,459m, 배수로 7조 1,227m
6.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7. 총사업비 : 1,976백만원(도비 1,778, 시군비 198)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전화 063-350-7078)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3 - 383호

황금봉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서 진안군 부귀면 봉암, 오룡, 거석, 수항, 황금, 두남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황금봉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황금봉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진안군 부귀면 봉암, 오룡, 거석, 수항, 황금, 두남리 일원
3. 사업목적 : 노후 파손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재정비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83.4ha
5. 사업개요 : 용수로 16조 3,112m, 배수로 23조 3,026m
6.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7. 총사업비 : 2,168백만원(도비 1,778, 시군비 390)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전화 063-350-7072)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3 - 384호

풍산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풍산면 용내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풍산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풍산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풍산면 용내리
3. 사업목적 : 노후 파손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재정비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76ha
5. 사업개요 : 용수로 19조 3,334m, 배수로 14조 2,259m
6.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7. 총사업비 : 1,976백만원(도비 1,778, 시군비 198)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전화 063-650-7063)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3 - 385호

천원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서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하부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천원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천원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하부리 일원
3. 사업목적 : 노후 파손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재정비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76ha
5. 사업개요 : 용수로 16조 3,488m, 배수로 16조 2,525m
6.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7. 총사업비 : 1,976백만원(도비 1,778, 시군비 198)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전화 063-530-0336)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2023-386호

쌍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 군산시 옥산면 일원에 추진 예정인 쌍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을 승인하고 편입토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쌍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일원 (쌍봉,당북양수장내)
3. 사업목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1520ha(쌍봉양수장), 150ha(쌍봉양수장)
5. 사업개요 : 양수장 2개소
6. 사업기간 : 2023. 12 ~ 2025. 12. (3개년)
7. 총사업비 : 2,789백만원(국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전화 063-440-5600)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군산시 당북리	3-18	구거	311	111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	"	3-9	구거	97	112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	"	3-7	구거	2,094	67	유재길	군산시 소룡동 1313-13 동아아파트 106동705호				
						왕은형	군산시 소룡동 1313-13 동아아파트 106동705호				
4	"	992-13	답	7,055	152	농수산부					
5	"	12-3	구거	301	5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	"	992-15	구거	4,419	3,426	농수산부					
7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1125	구거	51,815	2,808	농수산부					
8	"	1125-1	구거	6,612	50	농수산부					
9	군산시 당북리	992-8	구거	740	291	농수산부					
10	"	992-6	구거	6,874	257	농수산부					
11	"	4-7	구거	790	9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2	"	413-44	구거	559	41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	"	992-9	구거	177	49	농수산부					
계	"				7,378						

전라북도 고시 2023-387호

화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 군산시 서수면 일원에 추진 예정인 화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승인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화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군산시 서수면 일원
3. 사업목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186ha
5. 사업개요 : 용배수로 9조 L=5,343m
6. 사업기간 : 2023. 10 ~ 2026. 12. (4개년)
7. 총사업비 : 4,386백만원(국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전화 063-440-5826)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3-388호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 순창군 유등면, 풍산면, 적성면 일원에 추진 예정인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을 승인하고 편입토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 치 : 전북 순창군 유등면, 풍산면, 적성면 일원
3. 사 업 목 적 : 농경지 침수저감,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 혜 면 적 : 102.7ha
5. 사 업 개 요
 - 수 원 공 : 배수장 2개소(신설), 배수문 4개소(확장·정비)
 - 평 야 부 : 배수로 8조 L=4.15km
 - 매 립 : 7ha (20,794m³)
6. 사업 기간 : 2023. 12 ~ 2028. 12.(5개년)
7. 총 사업비 : 19,552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전화063-650-7053)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560-4	답	493	491	국(건설교통부)				
2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560-7	제방	271	271	국(국토교통부)				
3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382-6	도로	360	16	국(건설부)				
4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559-7	답	1	1	국(건설교통부)				
5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559-8	답	207	207	국(기획재정부)				
6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1270-5	구거	50	49	국(농수산부)				
7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560-2	답	854	854	여수현	557			
8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560-1	답	673	673	여수현	557			
9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1270-2	구거	3,733	2,232	국(농수산부)				
10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559-0	답	2,223	203	국(건설교통부)				
11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559-12	답	330	330	국(기획재정부)				
12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560-8	제방	109	109	국(국토교통부)				
13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1245-0	도로	546	36	국(건설교통부)				
14	순창군 적성면 과정리	560-5	답	222	219	국(건설교통부)				
15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591-0	답	1,060	53	오용	풍산면 두승리 542-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656-0	구거	2,435	14	국(농림수산식 품부)				
17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668-0	구거	528	16	국(농림수산식 품부)				
18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669-0	도로	1,302	26	국(농림수산식 품부)				
19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592-0	답	3,850	574	오용	풍산면 두송리 542-1			
20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857-0	답	982	982	한국농어촌공 사	의왕시 포일동 487			
21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58	도로	275	75	국(기획재정부)				
22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857-1	답	4	4	한국농어촌공 사	의왕시 포일동 487			
23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60	답	3,452	2,207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4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101	하천	501	499	국(건설부)				
25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113	답	660	640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6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112	답	172	42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7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91	하천	3,468	2,011	국(건설부)				
28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33-3	전	318	51	국(건설교통부)				
29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858-0	답	2,819	2,819	한국농어촌공 사	의왕시 포일동 487			
30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51-0	구거	973	370	국(농림수산식 품부)				
31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41-0	도로	2,526	50	국(농림수산식 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2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102	하천	829	282	국(건설부)				
33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99	하천	367	367	국(건설부)				
34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32-0	하천	254	234	국(건설부)				
35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52-0	도로	1,164	305	국(농림수산식 품부)				
36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22-0	도로	2,571	545	국(농림수산식 품부)				
37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31-1	하천	30	30	국(건설부)				
38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31-0	하천	879	879	국(건설부)				
39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53-0	구거	4,661	56	국(농림수산식 품부)				
40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30-0	구거	3,351	1,324	국(농림수산식 품부)				
41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32-1	하천	440	47	국(건설부)				
42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100	하천	434	434	국(건설부)				
43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856-0	답	2,640	418	박상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029 인후동한신 휴플러스아 파트 108-1203			
44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858-1	답	465	444	한국농어촌공 사	의왕시 포일동 487			
45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42-0	구거	3,057	79	국(농림수산식 품부)				
46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98	하천	320	72	전라북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7	순창군 두송면 송리	1319-0	도로	2,622	13	국(농림수산식 품부)				
48	순창군 두송면 송리	1323-0	구거	3,076	1,093	국(농림수산식 품부)				
49	순창군 두송면 송리	1321-0	구거	1,002	898	국(농림수산식 품부)				
50	순창군 두송면 송리	1435-0	답	2,844	490	오미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로64번 길 12-14씨동 202호 (계림동 광성연립주 택)			
51	순창군 두송면 송리	1434-0	답	1,526	128	김형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18 1동402호 (팔복동1가 팔복거성아 파트)			
52	순창군 두송면 송리	1433-0	답	2,306	63	김형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181동 402호(팔복 동1가 팔복거성아 파트)			
53	순창군 두송면 송리	1317-0	도로	2,519	25	국(농림수산식 품부)				
54	순창군 두송면 송리	234-1	답	1,198	288	김복희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507			
55	순창군 두송면 송리	234-5	답	1,809	48	국(건설부)				
56	순창군 두송면 송리	875-66	하천	1,080	39	국(건설부)				
57	순창군 두송면 송리	1318-0	구거	4,570	18	국(농림수산식 품부)				
58	순창군 두송면 송리	234-6	답	396	235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9	순창군 두송면리	176-6	제방	209	46	국(건설부)				
60	순창군 두송면리	1469-0	구거	1,817	1,815	국(농림수산식품부)				
61	순창군 두송면리	1471-0	구거	574	574	국(농림수산식품부)				
62	순창군 두송면리	1470-0	도로	935	426	국(농림수산식품부)				
63	순창군 두송면리	1101-1	구거	17	17	국(농림수산부)				
64	순창군 두송면리	1102-1	도로	10	10	국(농림수산부)				
65	순창군 두송면리	875-65	제방	107	19	국(건설부)				
66	순창군 두송면리	875-1	제방	4,598	64	국(건설부)				
67	순창군 두송면리	176-9	제방	517	67	국(건설부)				
68	순창군 두송면리	176-7	제방	1,151	38	국(건설부)				
69	순창군 유등면리	1729-0	구거	13,442	6,730	국(농림수산부)				
70	순창군 유등면리	1723-0	도로	17,727	724	국(농림수산부)				
71	순창군 유등면리	1297-2	제방	163	163	국(국토해양부)				
72	순창군 유등면리	1299-1	제방	518	58	국(국토해양부)				
73	순창군 유등면리	1297-0	답	1,744	1,744	권동석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마계길 51-10			
74	순창군 유등면리	1298-2	제방	40	40	국(국토해양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5	순창군 유등면 부수리	1298-0	답	2,928	2,928	권동석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마제길 51-10			
76	순창군 유등면 부수리	1298-1	제방	432	216	국(국토해양부)				
77	순창군 유등면 부수리	1720-1	제방	1,206	387	국(농림수산부)				
78	순창군 유등면 부수리	1720-0	구거	70,078	19,366	국(농림수산부)				
79	순창군 유등면 부수리	666-1	제방	100	60	국(건설부)				
80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1189-0	구거	1,061	1,061	국(농림수산부)				
81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1189-1	구거	425	91	국(농림수산부)				
82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259-1	제방	2,653	94	국(건설부)				
83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1071-1	답	1,359	40	국(건설교통부)				
84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262-10	하천	353	29	국(건설부)				
85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1187-2	구거	3,901	150	국(농림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19-0	답	2,930	167	김순남	광주 남구 월산동 405			
2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22-0	답	2,940	153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3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21-0	답	2,978	162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4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20-0	답	3,008	174	김순남	광주 남구 월산동 405			
5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82-0	답	2,979	181	이근춘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길 38			
6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89-0	답	2,543	240	이승팔	순창읍 남계리 800			
7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88-0	답	2,597	185	이남영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152-80 동아아파트 8-801			
8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85-0	답	1,653	104	이근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91			
9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87-0	답	2,722	192	박점순	194			
10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84-0	답	1,937	119	김종선	208			
11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86-0	답	1,229	83	이을영	188			
12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43-0	답	3,008	186	이우석	728			
13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35-0	답	3,044	177	이언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53-7			
14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36-0	답	3,009	184	권복순	709			
15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47-0	답	2,795	166	이종진	162-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41-0	답	2,988	185	이연주	730			
17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39-0	답	3,005	184	전주이씨덕홍은 대원군후월은 공파중증	915			
18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46-0	답	2,974	184	이금신	대전 서구 갈마동 345-23 401호			
19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74-0	답	3,066	183	이정두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315-1 유호아파트 105-106			
20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38-0	답	1,670	105	이양이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남로 41(도통동)			
21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739-0	도로	464	29	국(농림수산부)				
22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77-0	답	3,058	181	이인근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유적로 200			
23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73-0	답	2,950	173	최승식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화탄길 31			
24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33-0	답	2,979	261	이차주	경기도 부천시 성곡로98번 길 15904호(여 월동 영화참마음 아파트)			
25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40-0	답	3,040	186	이철교	704			
26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78-0	답	2,978	178	이종덕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길 41-3			
27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44-0	답	3,000	186	이철교	741			
28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81-0	답	2,995	179	김원근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409-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9	순창군 유등면리	1729-0	구거	13,442	374	국(농림수산부)				
30	순창군 유등면리	1376-0	답	2,875	171	한명수	177			
31	순창군 유등면리	1337-0	답	1,358	85	이양이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남로 41(도통동)			
32	순창군 유등면리	1380-0	답	2,986	176	이을영	188			
33	순창군 유등면리	1383-0	답	1,062	64	김종선	196			
34	순창군 유등면리	1345-0	답	2,950	183	이우민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54 번길 24202동 1607호(진월 동 삼익세라믹2 차아파트)			
35	순창군 유등면리	1311-0	답	2,958	134	이한주	895			
36	순창군 유등면리	1317-0	답	1,314	133	이현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길 23-1401호(신대방동)			
37	순창군 유등면리	1312-0	답	3,048	133	이윤기	747			
38	순창군 유등면리	1313-0	답	2,947	130	이성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50302동 1004호(신정 동 신정이펜하 우스3단지)			
39	순창군 유등면리	1315-0	답	1,358	76	이현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길 23-1401호(신대방동)			
40	순창군 유등면리	1316-0	답	1,990	141	이현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길 23-1401호(신대방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1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10-0	답	2,995	139	설정애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04			
42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14-0	답	1,146	55	이우필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화탄길 18-5			
43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18-1	답	489	325	김순님	광주 남구 월산동 405			
44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32-0	답	1,196	576	전주이씨덕홍 대원군파장립 도정공종중	산115-1			
45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18-0	답	2,341	702	김순님	광주 남구 월산동 405			
46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723-0	도로	17,727	124	국(농림수산부)				
47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420-0	답	2,882	293	채석순	145			
48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413-0	답	2,431	208	양정민	198			
49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419-0	답	3,021	302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관교로 98(포일동)			
50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60-0	답	4,304	1,099	권복순	709			
51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421-0	답	2,947	311	채석순	145			
52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414-0	답	2,049	166	이덕영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북로7길 25106동 1301호(봉곡 동 구미봉곡코 아루)			
53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49-0	답	1,836	202	이창용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212동 1306호 (목동동해솔 마을2단지월 드메르디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4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410-0	답	2,727	265	이영식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길 38-7			
55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62-0	답	1,089	151	이우동	715-1 07			
56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415-0	답	960	78	이덕영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북로7길 25106동 1301호(봉곡 동 구미봉곡코 아루)			
57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50-0	답	2,379	167	최승식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화탄길 31			
58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417-0	답	1,978	172	이연주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화탄길 16-1			
59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64-0	답	2,052	252	김종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02 번길 15 비동 302호(부평 동 우신빌라)			
60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411-0	답	2,851	258	양정민	198			
61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51-0	답	2,955	95	이기자	747			
62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63-0	답	2,026	248	이우동	715-1			
63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48-0	답	1,799	635	이우환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42			
64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61-0	답	669	93	이우석	728			
65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412-0	답	577	47	양정민	198			
66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409-0	답	2,478	263	서상철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유천길 22-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7	순창군 유등면 부수리	1416-0	답	937	76	오병옥	176			
68	순창군 유등면 부수리	1304-0	답	2,700	757	이연주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화탄길 16-1			
69	순창군 유등면 부수리	1299-0	답	2,909	527	이동영	138			
70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559-9	답	181	61	국(기획재정부)				
71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559-3	도로	198	10	국(건설교통부)				
72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250-4	잡종 지	10	13	전라북도				
73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270-2	구거	3,733	56	국(농수산부)				
74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250-1	도로	483	159	전라북도				
75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559-6	답	27	23	국(건설교통부)				
76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559-5	답	363	110	국(건설교통부)				
77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382-2	도로	3,385	251	국(건설부)				
78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555-6	도로	118	97	국(건설부)				
79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557-3	답	2,740	762	여수현	411-15			
80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264-2	도로	4,451	24	국(농수산부)				
81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552-0	답	1,919	169	이정오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원촌길 3			
82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555-5	답	3,018	547	여수현	411-1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3	순창군 적성면리	382-6	도로	360	45	국(건설부)				
84	순창군 적성면리	559-0	답	2,223	356	국(건설교통부)				
85	순창군 적성면리	1245-0	도로	546	22	국(건설교통부)				
86	순창군 적성면리	559-13	답	224	34	국(기획재정부)				
87	순창군 적성면리	560-0	답	282	72	여수현	557			
88	순창군 적성면리	560-6	제방	97	20	국(국토교통부)				
89	순창군 적성면리	557-2	답	2,671	110	여수현	411-15			
90	순창군 적성면리	383-3	전	36	13	국(건설부)				
91	순창군 적성면리	560-3	답	591	65	국(건설교통부)				
92	순창군 유등면외리	1151-0	답	1,925	114	조정자	516-1			
93	순창군 유등면외리	1157-0	답	1,097	50	윤영석	201-1			
94	순창군 유등면외리	1154-0	답	3,001	129	임경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98 금호아파트 6-104			
95	순창군 유등면외리	1158-1	답	1,287	64	순창군				
96	순창군 유등면외리	1158-0	답	580	18	순창군				
97	순창군 유등면외리	1156-0	답	2,991	137	임낙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96-154 대우청솔아 파트 가-40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8	순창군 외이리	1155-0	답	2,982	130	임이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30504동 714호 (중계동 주공아파트)			
99	순창군 외이리	1153-0	답	990	44	임병용	478			
100	순창군 외이리	1152-0	답	1,514	73	임기래	순창읍 남계리 249-5			
101	순창군 외이리	1093-0	답	1,190	65	임홍래	490-1			
102	순창군 외이리	259-1	제방	2,653	55	국(건설부)				
103	순창군 외이리	1093-1	답	1,377	65	국(건설교통부)				
104	순창군 외이리	1187-2	구거	3,901	50	국(농림수산부)				
105	순창군 외이리	262-10	하천	353	16	국(건설부)				
106	순창군 두승리	176-6	제방	209	20	국(건설부)				
107	순창군 두승리	176-9	제방	517	66	국(건설부)				
108	순창군 두승리	1059-1	답	434	13	국(건설교통부)				
109	순창군 두승리	875-65	제방	107	28	국(건설부)				
110	순창군 두승리	1371-0	답	2,873	142	남궁단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두승1길 36-1			
111	순창군 두승리	1368-0	답	3,992	225	김병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84-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2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367-0	답	3,075	174	행도건일	657			
113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369-0	답	4,501	261	정영순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82			
114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366-0	답	864	54	김해김씨삼현 파정은공후옥 과중중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155			
115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478-0	도로	1,513	34	국(농림수산식 품부)				
116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372-0	답	1,554	72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7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370-0	답	3,035	407	김인규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499101동 202호(풍산 휴먼시아아 파트)			
118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373-0	답	4,337	1,719	김용남	목포시 옥암동 916-3 제일3차아파 트 301-903			
119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359-0	답	3,402	367	전정순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두송1길 16			
120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360-0	답	4,065	221	최형철	786			
121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362-0	답	3,770	223	최복순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두송2길 30			
122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361-0	답	4,085	243	최복순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두송2길 30			
123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363-0	답	3,082	186	김영규	광주광역시 동구 학소로86번 안길 21(소태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4	순창군 순풍면 두송리	1364-0	답	969	57	서광현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205동 205호(나운 동 나운세경아 파트)			
125	순창군 순풍면 두송리	176-7	제방	1,151	80	국(건설부)				
126	순창군 순풍면 두송리	1365-0	답	4,008	247	김순덕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외이3길 34			
127	순창군 순풍면 두송리	875-1	제방	4,598	52	국(건설부)				
128	순창군 순풍면 두송리	1477-0	구거	858	16	국(농림수산식 품부)				
129	순창군 순풍면 두송리	911-18	답	232	26	순창군				
130	순창군 순풍면 두송리	875-8	전	3,121	1,087	최봉애	유등면 외이리 491			
131	순창군 순풍면 두송리	235-3	답	42	39	임동렬	유등면 외이리 491			
132	순창군 순풍면 두송리	235-1	답	775	439	임정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가재미1길 18-6 (인후동1가)			
133	순창군 순풍면 두송리	235-4	답	21	22	윤호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10101동 808호(시지 동아이프라 임시지)			
134	순창군 순풍면 두송리	1318-0	구거	4,570	14	국(농림수산식 품부)				
135	순창군 순풍면 두송리	1317-0	도로	2,519	21	국(농림수산식 품부)				
136	순창군 순풍면 두송리	1319-0	도로	2,622	22	국(농림수산식 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7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234-5	답	1,809	41	국(건설부)				
138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1193-0	답	4,038	255	안순예	우곡리 80			
139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1194-0	답	4,047	254	최재권	전라북도 순창군 송산면 두송2길 28-4			
140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1202-0	답	2,957	265	임주래	유등면 외이리 496-1			
141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875-66	하천	1,080	36	국(건설부)				
142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1200-0	답	4,054	270	서대훈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81-15103동 204호 (영암삼호한 양파크빌1차)			
143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234-6	답	396	48	국(건설부)				
144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1196-0	답	4,096	256	서한락	용내리 156-1			
145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234-1	답	1,198	462	김복희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507			
146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1189-0	답	3,102	203	김광수	724			
147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1188-0	답	3,089	202	김광수	724			
148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1190-0	답	936	65	김광수	724			
149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1186-0	답	3,132	213	박금자	724			
150	순창군 송산면 두송리	1187-0	답	3,011	192	김광수	72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1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182-1	수도 용지	620	38	국(환경부)				
152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185-0	답	3,048	200	최광용	803			
153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183-0	답	906	57	김두옥	648			
154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192-0	답	3,019	205	한정록	709-1			
155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182-0	답	283	19	김광수	광주 북구 용봉동 1245-34 우미아파트 101-1201			
156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184-0	답	1,275	88	최광용	803			
157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191-0	답	2,101	138	한정록	709-1			
158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323-0	구거	3,076	21	국(농림수산식 품부)				
159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195-0	답	4,049	259	김종대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건국3길 18			
160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199-0	답	2,070	136	이종란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외이2길 10-3			
161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197-0	답	3,859	245	김종암	대가리 905			
162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198-0	답	2,027	132	이태순	유등면 외이리 487			
163	순창군 풍산면 두송리	1433-0	답	2,306	131	김형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181동 402호(팔복 동1가 팔복거성아 파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4	순창군 두송리	1435-0	답	2,844	502	오미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로64번 길 12-14씨 동 202호 (계림동 광성연립주 택)			
165	순창군 두송리	1434-0	답	1,526	140	김형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북5길 18 1동402호 (팔복동1가 팔복거성아 파트)			
166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656-0	구거	2,435	18	국(농림수산식 품부)				
167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591-0	답	1,060	87	오용	풍산면 두송리 542-1			
168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669-0	도로	1,302	31	국(농림수산식 품부)				
169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590-0	답	2,989	31	김종범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가2길 14-7			
170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592-0	답	3,850	596	오용	풍산면 두송리 542-1			
171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668-0	구거	528	19	국(농림수산식 품부)				
172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91	하천	3,468	154	국(건설부)				
173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102	하천	829	77	국(건설부)				
174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33-1	전	605	194	국(건설부)				
175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12-0	답	2,023	89	박상렬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821			
176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52-0	도로	1,164	20	국(농림수산식 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7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51-0	구거	973	25	국(농림수산식 품부)				
178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11-0	답	866	48	박상렬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822			
179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53-0	구거	4,661	82	국(농림수산식 품부)				
180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30-0	구거	3,351	296	국(농림수산식 품부)				
181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32-0	하천	254	13	국(건설부)				
182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856-0	답	2,640	485	박상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029 인후동한신 휴플러스아 파트 108-1203			
183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60	답	3,452	185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84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98	하천	320	32	전라북도				
185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56	답	249	32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86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09-0	답	1,553	86	박창순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839			
187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12-1	답	19	19	한국농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188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112	답	172	136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89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33-3	전	318	63	국(건설교통부)				
190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08-0	답	4,056	99	박상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029 인후동한신 휴플러스아 파트 108-120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1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58	도로	275	21	국(기획재정부)				
192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10-0	답	2,007	111	류진환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3-4 백산아파트 603-1610			
193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827-0	답	4,043	51	박성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모악 로 4685101동 303호 (평화동2가 우미 아파트)			
194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827-1	답	358	73	한국농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195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32-1	하천	440	33	국(건설부)				
196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41-0	도로	2,526	21	국(농림수산식 품부)				
197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22-0	도로	2,571	105	국(농림수산식 품부)				
198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942-0	구거	3,057	22	국(농림수산식 품부)				

전라북도 고시 2023-389호

산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서 추진 중인 산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9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산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성당배수장), 용안면 난포리(석동배수장)
3. 사업목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석동배수장(204ha), 산수배수장(131ha)
5. 사업개요 : 배수장 2개소
6. 사업기간 : 2023. 11. ~ 2025. 12. (3개년)
7. 총사업비 : 2,804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전화 063-860-0068)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고시 2023-390호

대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익산시 춘포면, 왕궁면, 삼기면 일원에서 시행 예정인 대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대제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②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일원
- ③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영농환경개선 등
- ④ 수혜면적 : 173.2ha
- ⑤ 사업개요 : 평야부 9조 3,628m
 - 용수로 : 용수지선 3조 L=958m
 - 배수로 : 배수지선 6조 L=2,671m
- ⑥ 사업기간 : 2024. 03 ~ 2026. 12.(3개년)
- ⑦ 총사업비 : 3,472백만원
- ⑧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 ⑨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전화:063-860-0073)
- ⑩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 2023-391호

오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장수군 산서면 일원 오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오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장수군 산서면 일원
3. 사 업 목 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수리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영농기반 구축
4. 수 해 면 적 : 411.9ha
5. 사 업 개 요
 - 가. 평야부 : 용배수로 정비
 - 용·배수로 17조 5.049km(콘크리트 개거)
 - 나. 부대공사 : 가설사무소, 시험비, 중기운반 등
6. 사업 기간 : 2023. 12 ~ 2026. 12.
7. 총 사업비 : 3,732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전화063-350-7056)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3-392호

백운3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정읍시 고부면, 고창군 성내면, 흥덕면 일원 백운3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백운3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 치 : 전북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흥덕면 하남리 일원
3. 사 업 목 적 : 농경지 침수저감,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 혜 면 적 : 116.4ha
5. 사 업 개 요
 - 평 야 부 : 배수로 11조 L=5,098m(현대화 및 정비)
 - 복 토 : 17.9ha(42,887m³)
 - 부 대 공 : 시험비, 가설사무소, 중기운반, 구조물혈기 등
6. 사 업 기 간 : 2023년 ~ 2027년(5개년)
7. 총 사 업 비 : 8,994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전화063-530-0332)

전라북도 고시 제2023-393호

상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정읍시 산외면 일원 상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상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상두리 일원
3. 사 업 목 적 : 농경지 수자원확보, 관개개선,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등
4. 수 혜 면 적 : 75.3ha
5. 사 업 개 요
 - 수 원 공 : 양수장 1개소($0.25\text{m}^3/\text{s}$), 토출수조 1개소, 송수관로 3조 4.83km
 - 평 야 부 : 관수로 3조 2.96km, 개수로 1조 1.06km
6. 사업 기간 : 2023년 ~ 2027년(5개년)
7. 총 사업비 : 10,875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전화063-530-0332)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464-0	임	54,645	516	남양홍씨 목천공파 종중	북면마정리632				
2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687-0	도	125	64	국(건설부)					
3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38-1	답	2,367	465	정규생	701				
4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39-4	도	17	5	정읍시					
5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39-3	도	136	85	정읍시					
6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39-2	천	79	7	김산형용	529				
7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38-3	도	102	50	정읍시					
8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689-0	도	8,271	24	국(건설부)					
9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540-4	답	7	2	김상준	전라북도완주군용 진면신지송광로1 95				
10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59-2	도	17	16	박승철	정읍군산외면상두 리877				
11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689-2	도	349	45	국(건설부)					
12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690-0	도	1,968	110	국(건설부)					
13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533-1	도	55	2	정읍시					
14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549-1	답	1,795	2	박혜영	동곡리209				
15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540-1	답	2,053	214	김상준	전라북도완주군용 진면신지송광로1 95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6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812-0	도	4,551	521	국(농림수 산부)					
17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499-3	도	146	76	이명호	503				
18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40-0	대	569	1	양명옥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상두2길70				
19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540-3	답	565	56	김상준	전라북도완주군용 진면신지송광로1 95				
20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540-5	답	30	20	정읍시					
21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59-1	답	375	17	서복석	전라북도전주시완 산구장승배기로1 6(삼천동1가)				
22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59-3	답	18	18	정읍시					
23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688-3	구	2,066	5	국(농수산 부)					
24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39-6	답	1,078	80	양명옥	전라북도전주시덕 진구전주천동로3 38-5(진북동)				
25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535-1	답	1,790	104	김형근	947				
26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499-5	도	98	58	이명호	503				
27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499-6	도	43	8	이명호	503				
28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691-0	구	3,162	266	국(농수산 부)					
29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66-0	임	3,273	498	이정관	김제군금산면선동 리52				
30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751-0	구	960	9	국(농림부)					
31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737-1	답	3,033	62	송주열	전라북도전주시덕 진구무상지로106 04동1405호(인후 동1가아중마을부 영아파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32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750-0	도	8,460	18	국(농림부)					
33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754-0	구	5,561	115	국(농림부)					
34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600-0	구	203	203	국(농림수 산부)					
35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067-2	구	335	26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 동487				
36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067-1	답	3,070	73	왕기자	885				
37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165-0	답	2,317	179	문재근	대전광역시유성구 노은서로210번길 32408동1804호(지축동열매마을아 파트4단지)				
38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2	구	296	296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 동487				
39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748-0	천	4,246	17	국(건설교 통부)					
40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753-0	도	10,115	3876	국(농림부)					
41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43-1	전	4,190	162	정택조	정읍군산외면상두 리110-8				
42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53-0	답	365	213	송안근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상두2길89				
43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693-0	도	789	41	국(건설부)					
44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738-1	답	1,621	4	김석순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잠시내2길16				
45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752-0	구	63	40	국(농림부)					
46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711-2	도	732	516	국(건설교 통부)					
47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159-0	전	628	48	김도현	전라북도정읍시삼 산동1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48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160-0	묘	674	35	나주임씨 절도공파 도원종중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동곡리22-2				
49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42-5	구	297	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 동487				
50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96-0	구	45,752	294	국(농림부)					
51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72-1	임	22,810	381	김수엽	전라북도전주시완 산구효자동1가65 4-2쌍용모악파크 빌라502-1301				
52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71-0	임	6,248	46	김광재	정읍시이평면두전 리81				
53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48-1	임	3,121	426	이정윤	전라북도부안군변 산면지서리408송 림아파트101동60 9호				
54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49-1	임	4,264	15	원종기	경기도광명시광명 동158-202				
55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217-0	도	397	153	국(건설교 통부)					
56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50-1	임	16,562	340	김영울	고창군심원면월산 리779-1				
57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50-2	구	397	15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 동487				
58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74-0	임	1,091	71	민병후	329				
59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48-0	임	6,796	210	이정윤	전라북도부안군변 산면지서리408송 림아파트101동60 9호				
60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42-8	임	91	9	정읍시					
61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092-0	답	1,970	21	김양기	983				
62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208-0	도	7,603	1199	국(건설부)					
63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260-2	구	1,006	94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 동487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64	정읍시 외면 정량리	1224-0	도	228	219	국(건설부)					
65	정읍시 외면 정량리	262-4	도	17	14	정읍시					
66	정읍시 외면 정량리	385-28	전	17	16	최성문	162				
67	정읍시 외면 정량리	1072-0	전	790	19	김용득	김제군김제읍요촌 리153-1				
68	정읍시 외면 정량리	1071-0	전	476	152	정대균	경기도용인시기흥 구강남동로14606 호(구갈동팰리스 뷰)				
69	정읍시 외면 정량리	385-26	전	17	17	노병학	정읍시산외면정량 리321				
70	정읍시 외면 정량리	1086-0	답	4,856	46	민형주	경기도여주군북내 면현암리177-3상 진아파트7동205 호				
71	정읍시 외면 정량리	1088-0	답	2,668	44	권오엽	전라북도김제시금 산면원평로91101 동703호(원평파 라디소아파트)				
72	정읍시 외면 정량리	388-5	도	20	4	송영길	화죽리471				
73	정읍시 외면 정량리	385-24	전	23	4	노병학	정읍시산외면정량 리321				
74	정읍시 외면 정량리	387-2	도	10	3	김광한	113-2				
75	정읍시 외면 정량리	385-2	전	112	79	최기채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원정2길16-2 5				
76	정읍시 외면 정량리	385-16	구	1,034	89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 동487				
77	정읍시 외면 정량리	385-30	전	13	13	최성문	162				
78	정읍시 외면 정량리	1076-0	답	1,256	42	정상기	경기도구리시장자 호수길125102동 801호(토평동토 평마을이편한세상)				
79	정읍시 외면 정량리	1069-1	전	583	11	백학구	시흥시은행동83- 93신동아빌리지 에이-3-001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80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062-0	전	337	124	김영동	986				
81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063-0	전	23	23	백학구	1,060				
82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090-0	임	122	6	민병식	979				
83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77-0	임	51,669	210	박봉	정읍시산외면상두 리503-8				
84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262-6	구	734	67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 동487				
85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349-2	구	687	6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 동487				
86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388-6	구	161	15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 동487				
87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96-3	구	7,095	40	국(농림부)					
88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60-1	답	6,497	1055	민병화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원정3길12				
89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238-0	구	2,284	555	국(농수산 부)					
90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83-0	임	14,083	39	여산송씨 참판공파 당종중	978				
91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85-1	임	17,851	2	정태균	경기도용인시기흥 구강남동로14606 호(구갈동팰리스 뷰)				
92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86-0	임	3,719	16	정규조	서울특별시은평구 응암동2-20-202				
93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49-1	답	2,796	258	임미경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터널로173-5 2층202호(신사동 스카이빌)				
94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49-5	답	1,689	253	고상곤	정읍시산외면평사 리462-8				
95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53-0	답	3,142	1633	박대성	동곡리20-14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96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53-1	답	295	295	박대성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산외로467-1				
97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430-1	답	40	39	고동주	8				
98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34	답	2,539	102	민병화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원정2길12				
99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225-0	도	2,456	1071	국(건설부)					
100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239-0	도	251	24	국(건설부)					
101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51-4	답	30	29	전동오	산146				
102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51-5	도	66	66	전동호	산146				
103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81-6	답	899	192	임경채	1,135				
104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81-5	답	53	53	임대택	1,136				
105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81-7	답	99	99	임대택	1,136				
106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73-0	답	5,134	767	이윤원	정읍시산외면정량 리904				
107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74-0	전	4,311	452	송기만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원정2길28-6				
108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41	답	598	70	송재옥	978				
109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36-1	전	3,518	145	송창용	391				
110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61-4	도	19	19	전라북도					
111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31-2	답	1,283	39	김성현	전라북도김제시금 산면용산1길34-5				
112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230-0	도	49	49	국(기획재 정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13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19-0	답	364	56	김지영	전라북도전주시완 산구세대로23910 3동1101호(효자 동2가더살효자아 파트)				
114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30-1	유	46	46	양귀례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상용길76-17				
115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48-0	전	426	246	민재기	경기도용인시기흥 구덕영대로2077 번길20101동302 호(영덕동용인영 덕신일아파트)				
116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87-1	임	496	63	한광수	정읍시산외면정량 리904				
117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15-1	답	939	6	김정식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산외로414-8				
118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42	답	2,102	160	정읍시					
119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84-1	답	3,739	467	김솔강	전라북도김제시요 촌동1길49-214 층303호(요촌동)				
120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18-0	답	1,504	192	강양금	전라북도전주시완 산구신봉로49(효 자동1가)				
121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89-1	답	453	450	고상곤	평사리462-8				
122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49-6	수도 용지	259	56	정읍시					
123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84-3	답	1,327	1327	임호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북가좌동383-2 5				
124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47-1	전	380	33	정우식	315				
125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33-0	답	288	43	김정식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산외로414-8				
126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35-2	도	30	1	송종섭	978				
127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30-2	답	1,068	61	이병준	전라북도전주시완 산구유기전2길23 101동514호(효자 동1가대명까치맨 션아파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28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14-0	답	1,861	18	곽효섭	전라북도전주시완 산구화산천변로5 0107동1602호(중 화산동2가현대에 코르아파트)				
129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35-1	답	1,390	372	여산송씨 참판공파 당중중	978				
130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36-3	전	3,933	3	유다복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원정2길8-1				
131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81-4	답	929	177	임경채	1,135				
132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35-3	답	1,298	87	박순이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원정2길19				
133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16-0	답	1,845	154	김정식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산외로414-8				
134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88-0	답	3,464	867	고상곤	평사리462-8				
135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50-0	답	1,431	598	민재기	경기도용인시기흥 구덕영대로2077 번길20101동302 호(영덕동용인영 덕신일아파트)				
136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71-0	답	426	186	임대택	1,136				
137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84-2	답	3,121	912	임호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북가좌동383-2 5				
138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429-1	천	541	113	김정식	988-7				
139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429-3	천	24	12	정읍시					
140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28 7	전	81	4	정읍시					
141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28	전	620	126	김정식	988-7				
142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27	전	549	23	정읍시					
143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410-5	천	1,342	93	정읍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44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410-1	천	2,860	279	정병철	서울특별시영등포 구도림로1875동1 008호(대림동우 성아파트)				
145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409-0	임	295	111	송규섭					
146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408-0	천	2,380	20	정병철	서울특별시영등포 구도림로1875동1 008호(대림동우 성아파트)				
147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407-1	전	601	92	권녕현	서울영등포구대림 동1036-12				
148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406-1	답	487	76	송금섭	987				
149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400-1	전	2,722	291	송금섭	987				
150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400-3	도	16	6	정종무					
151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396-2	도	31	5	송종섭	978				
152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17-2	답	294	292	정읍시					
153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82-0	임	750,86 8	472	여산송씨 참판공파 당종중	978				
154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56-1	답	565	120	장옥희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정량리983-1				
155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956-2	답	1,302	9	장옥희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정량리983-1				
156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021-0	임	192	74	여산송씨 참판공파 당종중	978				
157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020-0	답	2,354	34	송기만	전라북도정읍시산 외면원정2길28-6				
158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002-0	답	1,937	200	여산송씨 참판공파 당종중	978				
159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003-0	답	3,495	16	허종만	전라북도정읍시이 평면두전포룡길1 9-20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60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001-0	답	2,073	139	정선임	988-4				
161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005-2	답	1,180	84	송재면	988-4				
162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005-3	답	1,122	93	송순례	서울강북구변동2 30주공아파트505 -1207				
163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222-0	구	298	4	국(농림수 산부)					
164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47-0	답	2,269	197	국정녀	울산중구반구동1 01-18				
165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45-5	도	7	3	조기주	382				
166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45-2	전	2,972	216	조석규	정읍군산외면상두 리872				
167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45-6	도	10	6	조기주	382				
168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44-4	도	79	3	정읍시					
169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45-1	전	1,068	101	조계윤	전라북도익산시무 왕로26길32105 동106호(부송동 동아아파트1차)				
170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45-7	천	69	33	정읍시					
171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666-0	천	147,72 9	50	국(건설교 통부)					
172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709-0	도	4,836	88	국(건설교 통부)					
173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17-7	도	36	19	문이남	872				
174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17-2	답	1,585	112	문재근	대전광역시유성구 노은서로210번길 32408동1804호(지족동열매마을아 파트4단지)				
175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25-0	묘	255	39	황기현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76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24-0	답	2,843	28	박성렬	875				
177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26-3	답	893	80	송두섭	정읍시산외면상두리942				
178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11-0	답	367	231	이창현	810				
179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10-1	대	496	9	이창현	서울구로구가리봉동125-8				
180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08-1	답	1,070	13	송두섭	전라북도정읍시산외면상두리942				
181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13-1	답	1,537	7	송안근	전라북도정읍시산외면상두리2길89				
182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07-0	답	677	18	송두섭	전라북도정읍시산외면상두리942				
183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522-0	임	19,808	8	박순찬	완주군이서면은교리135				
184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523-0	임	1,380	385	정우식	전주시대성동406-2				
185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520-0	임	1,964	85	국(산림청)					
186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06-0	답	449	38	홍종완	905-1				
187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396-1	전	1,541	348	송종섭	978				

전라북도 고시 제2023-394호

전라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변경(6차) 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지사

1. 계획명칭 : 전라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변경없음〉
2. 계획기간 : 2018년 ~ 2027년(10년) 〈변경없음〉
3. 대상지역 : 정읍시·남원시·김제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
부안군 〈변경없음〉
4. 계획의 목적 〈변경없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10년 단위 법정계획
 - 지역별 잠재력과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성장촉진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5. 재원 조달 계획 〈일부변경〉
 - 2027년까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총 34개소에 5,232억원 투입

(단위 : 억원)

구 분	유 형	사업수	투자계획('18~'27)			
			합 계	국비(국토부)	지방비	민 자
기정	발전 촉진형	33	4,331	1,932(1,678)	2,279	120
변경	발전 촉진형	34	5,232	2,263(1,708)	2,779	190

* 동 계획 상 국비지원 규모 및 사업규모는 향후 정책변화 등에 기인한 성장촉진 지역 예산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일부변경〉

지역	사업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간
					국토부	국토부 외		
합계		당초	33건	433,199	167,831	25,420	227,948	12,000
		변경	34건	523,217	170,831	55,475	277,911	19,000
정읍시	8건	변경 없음		62,439	44,739	6,800	10,900	0
	철도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		철도연결선로 (L=1.2km)	10,000	9,300	-	700	-
	전북 서남권 추모공원 2 단계 조 성 사 업		공원 32,110㎡, 주차장 5,600㎡	3,200	3,200	-	-	-
	구절초테마파크 기반 시 설 조 성 사 업		탐방로(L=1.9km, B=5m), 출렁다리 등	3,927	3,927	-	-	-
	오감만족 축산 테마 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		진입도로 L=410m, B=5m, 진입교량 L=46m, B=10m, 주차장 A=5,630㎡	2,770	2,770	-	-	-
	오감만족체험 축산 테마파크 조성사업		축산테마체험시설,국민여가 캠핑장,수익형관광시설	13,400	-	5,000	8,400	-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연결도로 확장 사업		도로확장(L=2.94km, B=8→20m(4차선))	22,937	22,937	-	-	-
	영원고분군마을 조 성 사 업		관광콘텐츠 및 상품개발, 관광수용체계 개선	3,600	-	1,800	1,800	-
	영원고분군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탐방로(L=4.3km, B=3~6m), 주차장	2,605	2,605	-	-	-
남원시	5건	당초	4건	62,887	12,500	-	50,387	-
		변경	5건	84,887	15,500	6,000	56,387	7,000
	원도심 접근성향상을 위한 북남원 IC~남원 원도심 연결 도로 개 설 사 업		의총로3가~향교동신협 (L=0.8km), 향교동신협~시청로3가 (L=0.5km)	18,000	4,000	-	14,000	-
	남원만인공원 조 성 사 업		공원 20,376㎡ 녹지 30,924㎡	13,887	3,887	-	10,000	-
	지리산IC~인월간 연결 도로 확 장 사 업		도로확장 (L=2.4km, B=25m)	19,000	-	-	19,000	-
	원도심-지리산 연결성 향상을 위한 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		도로개설 (L=3.07km, B=10m), 교량2개소	12,000	4,613	-	7,387	-
	지리산활력타운 조 성 사 업	신규 반영	타운하우스 36호, 단독32호 등 A=33,993㎡	22,000	3,000	6,000	6,000	7,000

지역	사업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간
					국토부	국토부 외		
김제시	2건	변경 없음		14,930	9,696	0	5,234	-
	김제 북부지역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도로 건설 (L=2,000m, B=11m)	11,500	9,500	-	2,000	-
	백산저수지 수변경관 조성 사업		변산책로 개설, 전망데크, 주차장	3,430	196	-	3,234	-
진안군	2건	변경 없음		37,030	13,500	-	23,530	-
	진안고원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공업용지(농특산물 연구 및 생산시설), 유통용지 73,287㎡	17,867	-	-	17,867	-
	진안고원명품홍삼집적화단지 연계도로		연계도로 (L=1.6689km, B=10m)	19,163	13,500	-	5,663	-
무주군	3건	당초	3건	21,090	12,500	2,120	6,470	-
		변경	3건	29,500	12,500	4,325	12,675	-
	무주읍권 관광기반구축을 위한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	당초	주차장 3,600㎡, 공원 60,000㎡	9,850	5,500	-	4,350	-
		변경	주차장 3,600㎡, 공원 60,000㎡	9,850	5,776	-	4,074	-
	무주 태권도원 내 태권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당초	진입도로 L=556m	8,240	4,000	2,120	2,120	-
		변경	진입도로 L=736m	16,650	4,000	4,325	8,325	-
	무주읍-부남면 우회도로 개설사업	당초	도로 신설 및 지하매설물 설치 (L=0.85km, B=9m)	3,000	3,000	-	-	-
		변경	도로 신설 및 지하매설물 설치 (L=0.85km, B=9m)	3,000	2,724	-	276	-
장수군	2건	변경 없음		64,300	13,500	0	50,800	0
	순환 복합관광 실현을 위한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		도로 (L=6,440m, B=8.0m)	40,000	13,500	-	26,500	-
	농축산물물종합유통센터 조성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조성 (A=53,295㎡)	24,300	-	-	24,300	-
임실군	3건	변경 없음		39,327	13,500	0	25,827	0
	섬진강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 사업		도로개설 (L=437m, B=11.25~15m)	12,619	6500	-	6,119	-
	임실치즈팜랜드내 관광기반 조성사업		유럽형태마공원 38,705㎡ 주차장 14,347㎡	9,800	7,000	-	2,800	-
	성수산에코힐링타운 조성 사업		왕가힐링타운, 생태관광센터, 기존시설리모델링 등	16,908	-	-	16,908	-

지역	사업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간
					국토부	국토부 외		
순창군	3건	당초	3건	86,500	22,500	16,500	35,500	12,000
		변경	3건	146,108	22,500	38,350	73,258	12,000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사업	당초	도로 개설 (L=7.6km, B=8.0m)	23,500	12,500	-	11,000	-
		변경	도로 개설 (L=7.6km, B=8.0m)	31,500	12,500	-	19,000	-
	순창 장류밸리 조성 사업	당초	433,293㎡ (발효 미생물종자원· 테라피센터, 체험시설·식물원, 숙박·기업연수시설등)	42,000	-	14,500	15,500	12,000
		변경	444,089.1㎡ (발효 미생물종자원· 테라피센터, 체험시설·식물원, 숙박·기업연수시설등)	88,608	-	31,148	45,460	12,000
	순창 장류밸리 기반시설 조성 사업	당초	진입도로 2.4km	21,000	10,000	2,000	9,000	-
		변경	진입도로 2.4km	26,000	10,000	500	15,500	-
고창군	3건	변경 없음		20,996	12,896	0	8,100	0
	석정은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연결도로 개설 사업		도로개설 (L=4.269km, B=10m)	5,900	-	-	5,900	-
	고창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 사업		고인돌생태공원 도로개설 (L=760m, B=8m)	9,700	9,000	-	700	-
	공음정보리 발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도로개설 L=4.29km, B=6.5~10.5m 주차장 1개소 21,501㎡	5,396	3,896	-	1,500	-
부안군	3건	변경 없음		23,700	12,500	-	11,200	-
	변산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		진입로 확포장 L=253m, B=22.5m 회전교차로 1개소	3,200	3,000	-	200	-
	부안 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사업		진입도로 L=233m B=120m 수생정원 주차장 A=13,611㎡	9,500	7,500	-	2,000	-
	자연에너지파크 조성 사업	당초	A=19,707㎡(도로 및 광장, 녹지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11,000	2,000	-	9,000	-
		변경	A=18,980㎡(도로 및 광장, 녹지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11,000	2,000	-	9,000	-

7. 관련도서의 열람

○ 열람기간 : 2023. 12. 29. ~ 2024. 1. 11.(14일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지역정책과(☎063-280-3616), 남원시 도시과(☎063-620-6472),
무주군 건설과(☎063-320-2446), 순창군 건설과(☎063-650-1835), 부안군
농촌활력과(☎063-580-4874)

※ 관련도서의 열람은 해당 시·군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396호

고창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검산리 외 8개리 일원 고창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고창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2. 위 치 :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검산리 외 8개리 일원
3. 사업목적 : 여유 수자원 배분, 가뭄피해 예방,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499.9ha
5. 사업개요
 - 수 원 공 :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1조 2.358km, 송수터널 1조 0.729km
 - 평 야 부 : 용수지선 1조 0.274km
 - 부대공사 1식
6. 사업기간 : 2023년 ~ 2028년(6년)
7. 총사업비 : 22,118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전화063-560-1529)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57 -1	유	156,165	77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	"	산131	임	1,528,843	6,132	국(산림청)					
3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산114	임	51,769	5,442	이명자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149				
4	"	산113	임	17,355	6,807	이명자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149				
5	"	산116	임	55,537	3,670	수원백씨남해 공파종중	정읍군 소성면 화룡리 486				
6	"	627-2	답	2,245	746	나제균 외 5인	535				
7	"	627-1	답	1,699	234	이기범 외 1인	303				
8	"	626	답	1,544	49	백구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315-14 신흥타운 시동 201호				
9	"	625	답	321	149	정도삼	선운리				
10	"	665	도	1,246	21	국(건설부)					
11	"	산142	도	893	343	국(건설부)					
12	"	산117	임	1,190	362	김서연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270-11				
13	"	666	도	337	208	국(건설부)					
14	"	630-1	답	2,385	83	김병욱 외 2인	수왕리 45				
15	"	659-4	구	3,196	22	국(건설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6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677	답	1,980	493	이승연	665				
17	"	773-3	구	2,657	514	국(건설부)					
18	"	681	전	562	62	이화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9가길 34, 102동 401호(종암동 노블레스타운)				
19	"	682	답	407	21	전주이씨 익양군파12대 종기종중	671				
20	"	789	도	1,607	54	국(건설부)					
21	"	693-2	도	60	60	정동원	봉암리 3				
22	"	693-4	도	178	34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3-397호

봉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봉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봉덕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삼고리, 남양리 일원
3. 사업목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농가소득증대
4. 수혜면적 : 59.9ha
5. 사업개요
 - 수 원 공 : 배수문 확장 3개소
 - 평 야 부 : 배수로 13조 L=4.04km
 - 부대공사 : 가설사무소, 시험비, 중기운반 등
6. 사업기간 : 2023. ~ 2026.
7. 총사업비 : 5,730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전화063-350-7072)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359-6	천	1,574.0	18.3	국(건설 교통부)					
2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359-2 5	제	78.0	3.2	국(건설 부)					
3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359-2 6	천	283.0	9.3	국(기획 재정부)					
4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359-2 7	천	721.0	21.1	국(기획 재정부)					
5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359-4 3	제	14.0	2.3	국(재정 경제부)					
6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1074	천	112.56 1.0	138.0	국(국토 해양부)					
7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1074- 3	제	787.0	12.3	국(건설 부)					
8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1074- 34	천	1,700.0	12.8	국(국토 해양부)					
9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38-1	답	36.0	36.0	장수군					
10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41	답	4.0	4.0	장수군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1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42	답	21.0	21.0	김재구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360				
12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845	구거	212.0	212.0	유방교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1207				
13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846	전	486.0	90.7	허인영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189-3 명진로알맨션 303				
14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848	잡종지	168.0	17.5	허인영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189-3 명진로알맨션 303				
15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849	답	231.0	231.0	김종대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730-1				
16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850	전	99.0	99.0	유방교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1207				
17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1669-2	전	32.5	32.5	전라북도					
18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1670-2	답	6.0	6.0	전라북도					
19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1671-2	답	22.9	22.9	국(건설부)					
20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1672-2	전	56.3	56.3	전라북도					
21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1673-1	전	41.7	41.7	전라북도					
22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1674-2	답	56.8	56.8	전라북도					
23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1675-2	답	260.4	260.4	국(건설부)					

전라북도 고시 제2023-398호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사 업 명 :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 치 : 전북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대량리,능금리,학선리 일원
3. 사 업 목 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농가소득증대 등
4. 수 혜 면 적 : 50.3ha
5. 사 업 개 요
 - 수 원 공 : 배수문 8개소(확장 및 정비)
 - 평 야 부 : 배수로 19조 L=4,292m
 - 매 립 : 2.40ha
6. 사업 기간 : 2024. 1 ~ 2027. 12.(4개년)
7. 총 사업비 : 5,408백만원
8. 사업시행자 : 진안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전화063-350-7076)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	동향면 자산리	881-1	답	896	35	허석운	자산리 1000				
2	동향면 자산리	1559	도	3,700	10	진안군					
3	동향면 자산리	1561	구	2,602	326	농식품부					
4	동향면 자산리	759	천	665	3	전라북도					
5	동향면 자산리	759-2	도	61	3	진안군					
6	동향면 자산리	759-1	천	846	21	진안군					
7	동향면 자산리	1425	구	804	13	농식품부					
8	동향면 자산리	716-4	도	78	1	진안군					
9	동향면 자산리	716-5	도	196	11	진안군					
10	동향면 자산리	716-2	도	177	7	성태수	대량리 656				
11	동향면 자산리	716-1	답	674	31	한용희	자산리 750				
12	동향면 자산리	717-2	답	890	51	고현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1 동아한일아파트 107-404				
13	동향면 자산리	718-4	도	165	18	성안민	자산리 676				
14	동향면 자산리	717-4	도	195	6	허외순	성남시 태평동 155단지-67				
15	동향면 자산리	717-1	도	10	4	소호영	대량리 152				
16	동향면 자산리	1429-1	도	186	5	국토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7	동향면 자산리	1474-2	구	238	1	농수산부					
18	동향면 자산리	1469	도	4,916	95	농식품부					
19	동향면 자산리	1473	구	1,900	454	농식품부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71호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제안이유

신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 산정 및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물가상승 등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및 감사원 「공립자연휴양림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및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는 등 내부 통제 방안 강화하여 휴양림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 시설 사용료 인상 및 신규 시설 사용료 산정(안 제10조, 별표 1)
- 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입장제한 기준 신설(안 제6조)
- 다. 시설물 사용의 예약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안 제12조)
- 라. 객실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한 예약제외 시설 운영기준 신설(안 제13조)
- 마. 예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자 예약 기준 신설(안 제14조)
- 바. 이용객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위약금 기준 보완(안 제15조)
- 사. 휴양림 매매·교환 등 금지 규정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 감사관, 여성청소년과, 인권담당관,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라. 입법예고 : 2023. 12. 29. ~ 2024. 1. 18.(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지사[참조 :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454) 전북 진안군 백운면 덕현로 45-54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화 : 063-290-6997, 팩스 : 063-290-5513, 이메일 : aktntk454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담당자(전화 : 063-290-69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입장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도지사가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휴양림의 안전을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휴양림 내 물놀이장은 숙박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12시”를 “11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내야하며”를 “납입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시설물 사용의 예약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이 예약한 날의 다음 날 23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통합예약시스템의 오류로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보수 또는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4.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 ③ 관리자는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시설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업무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6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의 시설물은 예약자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예약자는 휴양림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는 자신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휴양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양림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약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의 제목 “(예약금의 환불 등)”을 “(예약금의 환불 및 위약금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를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환불”을 “반환”으로 한다.

②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약금을 제외한 반환금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④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와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사 용 료 (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비수기 또는 주중	성수기 또는 주말	
숲속의 집	○ 30.8㎡(4인용)	1동/1일	70,000	100,000	※ 비수기 또는 주중에는 성수기 또는 주말 사용료 의 할인율 30% 적용
	○ 40.4㎡(4인용)		112,000	160,000	
	○ 55.9㎡(8인용)		126,000	180,000	
	○ 62.8㎡(8인용)		161,000	230,000	
	○ 76.5㎡(8인용)		196,000	280,000	
	○ 85.0㎡(15인용)		189,000	270,000	
한옥형 숙박시설	○ 37.08㎡(8인용)	1동/1일	84,000	120,000	
	○ 75.09㎡(16인용)		168,000	240,000	
산림문화 휴 양 관	○ 16.0㎡(4인용)	1동/1일	35,000	50,000	
	○ 22.0㎡(4인용)		49,000	70,000	
	○ 105.3㎡(23인용)	1실/1일	238,000	340,000	

1. “성수기”란 매년 7.15~8.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비수기”란 매년 7.15~8.24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3. “주말”이란 금·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별표 2]

위 약 금 공 제 및 배 상 기 준 (제15조 관련)

1.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구 분		공제 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성 수 기	-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100% 공제	총 요금의 100% 공제	
비 수 기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2. 전북특별자치도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구 분		배상 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성 수 기	-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 수 기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별지 서식]

데미샘자연휴양림 예약제외 시설사용대장

			결 재

1. 근무자

직 급	성 명	서 명	직 급	성 명	서 명

2. 예약제외 시설 예약내용

◦ 예약사유 :

◦ 사 용 자 :

◦ 예약일자 :

◦ 사용일자 :

◦ 사용목적 :

3. 이용인원 및 사용실적

입장자 수	시 설 사 용 실 적			비 고
	주 차 장	숲속의 집	휴양관	
명	대	등	실	

4. 특기사항

※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방문, 각종사건 등 기재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6조(입장제한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도지사가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휴양림의 안전을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② 휴양림 내 물놀이장은 숙박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p>
<p>제10조(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u>별표</u>와 같다.</p> <p>②·③ (생략)</p>	<p>제10조(시설사용료) ① ----- ----- <u>별표 1</u>과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② (생략)</p>	<p>제11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② (현행과 같음)</p>

③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입실
일(check-in) 15시부터 퇴실일(chec
k-out) 12시까지로 한다.

④ (생 략)

제12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휴양림
의 시설물은 통합예약시스템 등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
은 예약한 날로부터 다음날 23시 50
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입함으
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일 기준
7일 전부터는 예약 신청한 때부터 3
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
야하며, 예약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
에 대해 당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은 시설사용료 전액을 즉시 납입하
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
사용료를 본인 명의로 전액 납입하
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③ -----

----- 11시-----.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휴양림
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
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
다.

② 시설물 사용의 예약은 제1항에 따
라 시설물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
약자"라 한다)이 예약한 날의 다음
날 23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
입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제2항-----

----- 납입
하여야 하며-----

-----.

④ ----- 제2항 및 제3항-----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통합예약시스템의 오류로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보수 또는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4.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시설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1항에

제13조(예약금의 환불 등) ①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② 관리자는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시설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업무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5조(예약금의 환불 및 위약금 등)

① -----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신 설>

<신 설>

③ 예약금의 환불은 예약자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 설>

제14조 ~ 제20조 (생략)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약금을 제외한 반환금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④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 반환-----
-----.

제16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의 시설물은 예약자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예약자는 휴양림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는 자신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휴양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양림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약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7조 ~ 제23조 (현행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72호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제안이유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1.12.31.)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에 전북사랑도민을 추가하여 출향인 및 연고자 등 타 지역 거주자의 전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활력 제고와 향후 장래인구로의 유입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확대(안 제4조의2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감사관, 여성청소년과, 인권담당관, 기업애로해소지원단

라. 입법예고 : 2023. 12. 29. ~ 2024. 1. 18.(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지사[참조 :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454) 전북 진안군 백운면 덕현로 45-54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화 : 063-290-6997, 팩스 : 063-290-5513, 이메일 : aktnftk454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담당자(전화 : 063-290-6997)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4조의2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 고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장애인	중증	50%	주중에 한함
		경증	30%	
	국가보훈대상자	50%		
	다자녀 가정	50%		
	지역주민	50%		
	전북사랑도민	50%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100%		연 2회
	명예 도민	100%		
	전북투어패스 이용자	10%		연중

※ 비 고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2.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준용 및 지원대상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3.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
4. 지역주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진안군인 사람
5.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에 따라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
6. 명예도민: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 증서를 받은 자
7. 전북투어패스 이용자: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유료 관광지 무료입장 등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이용권을 소지한 자
8. 전북사랑도민: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 받아 소지한 자
9. 주중: 성수기(매년 7.15.~8.24.)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
10. 장애인 등록증 등 시설사용료 감면 증빙 자료는 이용 당일에 예약자 본인 기준으로 휴양림 매표소에 제출해야 한다.
11. 시설사용료 감면은 1인 1실에 한하며, 사용료의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의2(시설사용료의 감면) ----- 제18조제1항----- ----- -----.

전라북도 공고 제2023-2027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93호	휴먼시스템 대표 신동기	전라북도 남원시 동림로 115(향교동)	2023.12.20.

전라북도 공고 제2023-2031호

2024년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산림문화·교육분야) 공모계획 공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24년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산림문화·교육분야)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2월 29일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가. 단체 자격요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할 것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다. 지원범위

-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라. 지원 제외단체

-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처벌받은 단체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 시·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 등)에서 지원받는 단체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단체
-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 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
 -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부당집행 단체,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 'F' 등급인 단체
- 3년 이상 동일 또는 유사사업 지원 단체는 일몰제적용
 - 사업의 연속성·효과성 등을 감안, 계속 지원여부 위원회에서 결정
- 종합평가 D등급 단체 지원신청 시 전년대비 지원금액 의무적 감액
- 종합평가 2년 연속 D등급 단체 일몰 적용

2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지 원 사 업 분 야	접수처(부서)	연락처	비고(담당)
산림문화·교육지원사업	산림복지과 - 산림정책팀 - 숲문화팀 - 산림경영팀	280-2663 280-4669 280-2682	김성진 이지원 송애란

3 사업추진기간 : '24. 3 ~ 12월

-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 부터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2. 29.(금) ~ 2023. 1. 12.(금) 18:00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 2024. 1. 12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택배 제출은 단체 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2024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공고서식 참고)
-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단체요건, 동일·유사사업 3년이상 지원여부, 공익사업 추진실적 등
 -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업무이해도와 책임감, 인력운용 능력, 기관장 의지 및 수행책임자의 전문성 검토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신청예산 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 심 사 : 2024. 2월 예정
- 선정결과 공표 : 2024. 2월중 / 도 홈페이지 게재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 주1.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사전조치)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주2.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 산림녹지과
-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8 기타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24년 지원 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 할 수 있음

붙임 2024년 사업 신청서류 서식 1부. 끝.

붙임1

단체별 자료 - 신청단체 작성

= 2024년도 ○ ○ ○ 지원 사업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 사업계획서

= 2024년도 ○ ○ ○ 지원 사업

사 업 신 청 서

■ 사업지역 : △ △ 시, △ △ 군 (※ 해당 지역을 모두 기재바랍니다.)

■ 단체등록

구 분	등록(허가) 여부			미등록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세무서 (고유번호증)	
등록(허가)일자				
등록(허가)번호				

※ 해당 “란”을 기재하시고, 단체등록 확인가능 증빙서류(1부)를 첨부

■ 신청내용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사업분야	< 공고문 참고 > 예시) 정보.통신 활성화 사업							
2024년 신청 사업비	총	천원	도 비		총			천원(%)
			자부담		총			천원(%)
최근 3년 간 보조 지원 실적 (천원)	연 도	사 업 명			보조금 지원액(천원)			
			국비	도비	사군비	자부담		
	2021							
	2022							
	2023							
단 체 연락처	주 소	※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팩 스			
	대 표 자	직위	성명	핸 드 폰				
	실 무 자	직위	성명	핸 드 폰				

2024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첨부서류】

1. 2024년 공익활동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2.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3.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4.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전라북도지사 귀하

= 2024년도 ○ ○ ○ 사업 지원 =

단 체 소 개 서 (예시)

단체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재 전라북도 시 구 (대로, 로, 길)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																								
기구현황 및 운영실적	<p>○조직 및 인력구성</p>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예시)</p> <div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회 장</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홍길동</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000-0000-0000</td></tr> </table> <div style="margin: 5px 0;"> </div>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상임이사</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유관순</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div style="margin: 5px 0;">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사무국장</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본부</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div> <div style="margin: 10px 0;">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재 정</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정책기획</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모 니 터</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홍 보</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단체 임·직원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p>			회 장	홍길동	000-0000-0000	상임이사	유관순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회 장																											
홍길동																											
000-0000-0000																											
상임이사																											
유관순																											
.....																											
사무국장																											
.....																											
.....																											
지역본부																											
.....																											
.....																											
재 정																											
.....																											
.....																											
정책기획																											
.....																											
.....																											
모 니 터																											
.....																											
.....																											
홍 보																											
.....																											
.....																											
2023 단체결산 현황	<p>○ 결산총액 : 천 원</p> <p>- 회비수입 : 천 원(%),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천 원(%)</p> <p>- 도 보 조 : 천 원(%), 시·군 보 조 : 천 원(%)</p> <p>- 사업수익 : 천 원(%), 기 타 : 천 원(%)</p>																										
2024 단체예산 현황	<p>○ 예산총액 : 천 원</p> <p>- 회비수입 : 천 원(%),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천 원(%)</p> <p>- 도 보 조 : 천 원(%), 시·군 보 조 : 천 원(%)</p> <p>- 사업수익 : 천 원(%), 기 타 : 천 원(%)</p>																										

2023 공익사업 추진실적

주1. 2023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모두 기술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보조사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주요내용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주요내용 :
	...	
자체사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내용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내용 :
	...	

2024 공익사업 추진계획

주1. 2024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을 보조금사업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계획을 모두 기술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보조사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4.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주요내용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4.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주요내용 :
	...	
자체사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4.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내용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4.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내용 :
	...	

= 2024년도 ○○○지원 사업 =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추진 목적

○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00. 00. ~ 00. 00.
- 사업지역 : △△△시, ○○○군
- 수혜대상 : (예: △△△시, ○○○군 아동청소년, △△△시, ○○○군 독거노인)
- 사업내용(☞ 보조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건별 작성)
 - 사업 일시 :
 - 사업 장소 :
 - 사업 대상인원 :
 - 주요 프로그램 :

4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 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또는 사업추진을 통한 도정현안 문제해결 새로운 기법 자세히 기재
- 본 신청사업을 왜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관련된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참고문헌, 언론 및 방송자료, 자체 조사, 연구보고서 활용 등 타당한 근거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기술.

5 사업지역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1) 사업지역

- 사업의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2) 추진일정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	○

6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

1) 자체평가 계획

- 지원사업 추진과정 전반 혹은 중간평가, 결과평가에 대한 자체점검 또는 평가계획
-

2) 사업의 실현가능성

-
-

7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여도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

8 사업예산

1)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천원(100%)
○ 도비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2) 지출항목(비목)별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사업명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인건비	· 단순인건비				인원*단가*횟수
사업 진행비	· 강사비				인원*단가*횟수(시간)
	· 회의참석비				인원*단가*횟수(시간)
	·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횟수*인원
	· 식비				단가*횟수*인원
	· 홍보비				단가*수량
	· 물품구입비				단가*수량
	· 임차비				임차내용*단가*횟수
	· 제세공과금				사용내역별 단가*횟수
활동비	· 간담회 경비				단가*횟수*인원

※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진행비 편성 시 비목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

※ 활동비 편성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명확히 기재

※ 상시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 단일 건 소요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 불가

3) 자부담 조달계획

○ 회비수입	:	천원(%)
○ 기부금	:	천원(%)
○ 사업수익	:	천원(%)
○ 기타	:	천원(%)

전라북도 공고 제2023-2036호

비영리민간단체 단체명칭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단체명칭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9.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20호
2. 단체명칭 : 군산가정상담센터
3. 소재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36-1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명 : 조미영
 - 생년월일 : 1950. 06. 16
5. 주된 사업
 - 법률구조사업
 - 가정문제 해결 등
6. 변경 내용

구분	변경내용		비고
	변경전	변경후	
단체명칭 변경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군산가정상담센터	

7. 허가(변경)일자 : 2023. 12. 21.

전라북도 공고 제2023 - 2046호

도로공사 시행(변경)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전라북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외변산~원평 (지방도 736호선)
도로공사의 종류	회전교차로 1개소(내접원 지름 27.0m)		
도로공사 구간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31번지 일원(지방도 736호선)		
도로공사 시행장소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31번지 일원(지방도 736호선)		
도로공사 착공 예정일	당초 : 2023. 10. 변경 : 2023. 11.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2024. 12. 31.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김제 원평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 * (변경사유) 회전교차로 편입용지 협의매수 어려움으로 보도블록 식재 후 재설계		

군산시 공고 제2023 - 265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6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지곡동 391-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9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9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 외 1개노선)사업
- 2) 명 칭 :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중로 2-16 : L= 94m, B=3.0m
- 2) 중로 2-63 : L=133m, B=3.0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업시행자 : (주)은성종합개발(전북 익산시 동서로63길 4, 606호(어양동, 하모니시티))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0.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중로2-16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391	3	전	13	13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2	지곡동	산135	9	임	2	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3	지곡동	산135	11	임	20	20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4	지곡동	산135	13	임	19	19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5	지곡동	산135	15	임	19	19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6	지곡동	산135	17	임	22	2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7	지곡동	산135	19	임	18	18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8	지곡동	산139	3	임	25	25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9	지곡동	산140	36	임	101	101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계	9필지				239	239						

2) 중로2-63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393	3	대	11	11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2	지곡동	396	2	대	59	59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3	지곡동	396	15	도	6	6	군산시					
4	지곡동	396	4	전	47	47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5	지곡동	396	18	도	2	2	국(국토교통부)					
6	지곡동	396	20	도	14	14	군산시					
7	지곡동	396	21	도	3	3	두말*	군산시 지*동 395				
8	지곡동	414	6	전	64	64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9	지곡동	416	6	유	68	68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0	지곡동	416	8	도	1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지곡동	417	5	전	33	33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2	지곡동	417	6	도	3	3	군산시					
13	지곡동	418	1	전	22	2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4	지곡동	418	13	전	1	1	군산시					
15	지곡동	산115	7	임	27	27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6	지곡동	산117	4	임	22	2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계	16필지				383	383						

익산시 고시 제2023-235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3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익산시 고시 제2023-172(2023.9.1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3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3년 12월 2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 치 : 익산시 마동 1-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3호)사업
 - 사업의 명칭 : 마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변경없음)
 - L=28.7m, B=3m, 면적:8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 (당초)2024. 01. 30. (변경)2024.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불임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지 적 (㎡)	편 입 지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	읍면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익산시	마동	1-72	도로	66	66	아시아신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 동대로 *** (대치동,케 이티앤지타워)				
2	익산시	마동	산1-5	도로	21	21	소흥*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				
							소나*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	서정*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900, 호성 주공2단지아파트 ***	근저 당	
									한국 자산 ****	서울특별시 강 남구 강남대로 *** (역삼동) (전북지사)	가압 류	

익산시 고시 제2023-237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 녹색도시조성과(☎063-859-58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3년 12월 2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174-1번지 외 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
 - 명 칭 :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4,667㎡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리츠웰임대주택협동조합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60(갈산동)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12.31.까지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4.12.31.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연 번	시	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이해 관계인	비고
1	익산	인화동2가	174-1	철	37,990	2,343	국토교통부			
2	익산	인화동2가	230	철	60	60	국토교통부			
3	익산	인화동2가	231	답	3	3	주식회사 동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기계진흥회관 신관7층		
4	익산	인화동2가	232	철	60	60	국토교통부			
5	익산	동산동	590-16	철	5,586	2,157	국토교통부			
6	익산	동산동	609-35	도	1	1	익산시			
7	익산	동산동	813-44	철	43	43	국토교통부			
합 계 (7필지)					43,743	4,667				

익산시 공고 제2023 - 3399호

지방도 제723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익산시 춘포면~왕궁면 일원의 지방도 723호선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2023년 12월 29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신설	지방도	제723호선	춘포~왕궁	익산시 춘포면 일원	43,251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948-14도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31-1도	전라북도 교육청 유아교육 진흥원	4.5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시도54호선, 군도 29호선, 농어촌도로(면도 101호 춘팔선)으로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지방도723호선 승격에 따라 관리권자가 익산시에서 전라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으로 결정하고, 도로의 유지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기 조성완료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익산시청 건설과 ☎ 063-859-5536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 12. 29. ~ 2024. 01. 12. (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건설과(☎: 063-859-5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방도 723호선 도로구역 편입토지조서

구분	주소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 계				162,271	43,251		
1	익산시 왕궁면 운수리	634-1	도로	3,527	103	국(건설부)	
2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269-7	도로	717	717	익산시	
3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288-1	도로	1,432	883	익산시	
4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434-21	도로	14	14	익산시	
5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443-4	잡	231	178	익산시	
6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455-8	도로	777	777	익산시	
7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687	도로	8,393	236	국(건설부)	
8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687-14	도로	820	642	국(건설부)	
9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687-15	도로	616	357	국(건설부)	
10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690	구거	27,861	356	국(농림수산부)	
11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690-3	구거	509	298	국(농림수산부)	
12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14-21	도로	1,176	690	익산시	
13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15-7	도로	450	87	익산시	
14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15-9	도로	1,404	992	익산시	
15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32	구거	1,940	34	국(농수산부)	
16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35	도로	1,045	21	국(농수산부)	
17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38	구거	2,076	1,266	국(농수산부)	
18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38-1	구거	349	298	국(농수산부)	
19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38-2	구거	756	203	국(농수산부)	
20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40	도로	5,722	5,557	국(농수산부)	
21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43	구거	4,990	9	국(농수산부)	
22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44	도로	4,101	4	국(농수산부)	
23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45	구거	11,665	227	국(농수산부)	
24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46	도로	3,515	7	국(농수산부)	
25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56	구거	9,447	1,511	국(농수산부)	
26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58	도로	1,167	48	국(농수산부)	
27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64	도로	1,565	579	국(농수산부)	
28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765	도로	8,287	6,345	국(농수산부)	
29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948-14	도로	828	634	익산시	
30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948-16	답	375	328	이관호	전주군 전주면 대화정
31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948-18	도로	559	429	익산시	
32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949-10	도로	1,749	1,582	익산시	
33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949-15	도로	2,152	2,006	익산시	
34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950-21	도로	785	560	익산시	

구분	주소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35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955	도로	8,579	203	국(농림수산부)	
36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956	구거	4,629	110	국(농림수산부)	
37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960	구거	1,431	168	국(농림수산부)	
38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961	구거	1,682	167	국(농림수산부)	
39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30-1	도로	212	145	국(건설부)	
40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31	답	291	64	김향순	익산시 왕궁면 운수리 594-2
41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31-1	도로	175	175	국(건설부)	
42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32-2	도로	10	10	익산시	
43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32-4	도로	79	79	국(건설부)	
44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33-1	답	3	3	박인규	
45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33-2	도로	66	66	익산시	
46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34-1	도로	17	16	국(건설부)	
47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35-1	도로	30	29	국(건설부)	
48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36-2	도로	608	608	익산시	
49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36-3	도로	575	561	국(건설부)	
50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37-5	도로	60	51	국(기획재정부)	
51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61-2	도로	896	804	김옥배	왕궁면 운수리 460
52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61-3	대	165	165	익산시	
53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61-4	도로	195	157	국(건설부)	
54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62-1	도로	195	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5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62-2	대	50	49	익산시	
56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63-3	대	211	59	익산시	
57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72-1	답	116	66	익산시	
58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73-1	답	24	13	익산시	
59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605-14	전	11	1	국(재정경제원)	
60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605-19	구거	3,084	746	국(농림수산부)	
61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605-21	구거	2,815	369	국(농림수산부)	
62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605-34	구거	1,234	646	국(농림수산부)	
63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311-1	하천	3,980	280	국(건설부)	
64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311-4	전	13	6	국(기획재정부)	
65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311-5	구거	79	35	국(농림수산부)	
66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311-6	도로	2,348	1,653	익산시	
67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312	하천	1,362	353	국(건설부)	
68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315-2	구거	634	9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9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316-13	도로	92	76	백송치	208
70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320-1	하천	314	27	국(농림부)	
71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486	하천	2,916	554	국(농림부)	
72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487	하천	860	311	국(농림부)	
73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882-12	도로	2,714	23	국(건설교통부)	
74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921-17	도로	4,812	3,354	익산시	

구분	주소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75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921-25	도로	2,935	2,433	익산시	
76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927	구거	77	53	국(농림수산부)	
77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928	도로	134	76	국(농림수산부)	
78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933	구거	103	42	국(농림수산부)	
79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934	구거	247	247	국(농림수산부)	
80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948	구거	208	123	국(농림수산식품부)	

㉔ 도로구역 위치도



남원시 고시 제 2023-193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남 원 시 장

1.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336	전촌지구	자연취락 지구	운봉읍 화수리 421-37번지 일원	-	31,999	남원시 고시 제2020-15호 (2020.1.17.)	운봉읍 (비도시지역)
변 경	336	전촌지구	자연취락 지구	운봉읍 화수리 421-37번지 일원	-	41,502	남원시 고시 제2020-15호 (2020.1.17.)	운봉읍 (비도시지역)
기 정	348	호경지구	자연취락 지구	주천면 호경리 108번지 일원	-	46,213	남원시 고시 제2020-15호 (2020.1.17.)	주천면 (비도시지역)
변 경	348	호경지구	자연취락 지구	주천면 호경리 108번지 일원	-	60,437	남원시 고시 제2020-15호 (2020.1.17.)	주천면 (비도시지역)
기 정	541	호곡2지구	자연취락 지구	수지면 호곡리 92-124 일원	-	15,130	남원시 고시 제2022-80호 (2022.6.17.)	수지면 (비도시지역)
변 경	541	호곡2지구	자연취락 지구	수지면 호곡리 92-124 일원	-	17,966	남원시 고시 제2022-80호 (2022.6.17.)	수지면 (비도시지역)

나.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36	전촌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변경 - 면적 : 31,999㎡ → 41,502㎡(증 9,5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348	호경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변경 - 면적 : 46,213㎡ → 60,437㎡(증 14,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541	호곡2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변경 - 면적 : 15,130㎡ → 17,966㎡(증 2,8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2.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 “실음생략”

남원시 고시 제2023-195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30년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3년 12월 29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관계도서 : “실음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우)	인월면 상우리 356 일원	50,866	(증)2,307	53,173	경제기획원고시 제245호 (1984.9.2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우)	인월면 상우리 356 일원	○면적 변경 - 50,866㎡ → 53,173㎡ (증 2,307㎡)	○인월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구역 계로 편입시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 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1	공공 청사	운봉읍 사무소	운봉읍 서천리 347-11 일원	6,647	(증)7,168	13,815	남원시고시 제2010-34호 (2010.8.13.)	

2)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1	공공청사	◦ 면적 변경 - 6,647㎡ → 13,815㎡ (증 7,168㎡)	◦ 운봉읍사무소 부지 확장 등을 고려하여 금회 도시계 획시설(공공청사) 면적 변경

3)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07	체육시설	궁도장	운봉읍 화수리 94-2 일원	-	(증)14,130	14,130	금회	
신설	508	체육시설	국민체육 센터	산내면 장항리 209 일원	-	(증)4,270	4,270	금회	

4) 체육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07	체육시설	◦ 신설 - 14,130㎡	◦ 궁도장으로 기 운영 중인 시설을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금회 도시 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
508	체육시설	◦ 신설 - 4,270㎡	◦ 체육여가 수요 증가로 인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스포츠복지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회 도시계획시설(체육 시설)로 결정

완주군 공고 제2023-2111호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완주 축구메카)사업 공사완료 공고

완주군 고시 제2023-101호(2023. 10. 2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완주 축구메카)사업인 완주 축구메카 조명탑 신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완 주 군 수
2023년 12월 2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봉동읍 울소리 10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완주 축구메카)사업
 - 나. 명 칭 : 완주 축구메카 조명탑 신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20,775㎡, 조명타워 6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현대자동차(주)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대로 12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건축허가일 ~ 2023. 12. 20.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주완산소방서 공고 제2023-0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2023년 12월 29일

■ 공 고 사 항

① 등록번호 : 전주완산 제2023-01호

② 단체명칭 : (주)혁신방재

③ 대 표 자

○ 성 명 : 장희재

○ 생 년 월 일 : 1993.09.16.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예정된 처분	비고
(주)혁신방재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배학3길 6, 101호	장희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남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189호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 12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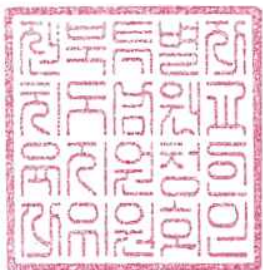
1. 공인의 등록(재등록)

가. 공인 등록(재등록)사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으로 새롭게 공인 제작 후 등록(재등록)

나. 최초 사용년월일: 2024. 1. 18.

다. 공인 등록(재등록)내용

공 인 명(규격)		공 인 명(규격)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인 (2.7cm×2.7cm)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재무관인(2.0cm×2.0cm)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2.0cm×2.0cm)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1.8cm×1.8cm)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지출원인(1.8cm×1.8cm)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1.8cm×1.8cm)
		

공 인 명(규격)	공 인 명(규격)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1.8cm×1.8cm)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일상경비출납원인(1.8cm×1.8cm)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인(3.6cm×3.6cm)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3.6cm×3.6cm)
	

2. 공인의 폐기

- 가. 공인 폐기사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으로 새롭게 공인 제작 후 기존 공인 폐기
- 나. 폐기일: 2024. 1. 18.
- 다. 공인 폐기내용

공 인 명(규격)		공 인 명(규격)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인(2.4cm×2.4cm)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재무관인(2.0cm×2.0cm)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2.0cm×2.0cm)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1.8cm×1.8cm)
		

공 인 명(규격)	공 인 명(규격)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지출원인(1.8cm×1.8cm)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1.8cm×1.8cm)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1.8cm×1.8cm)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남원교육지원청일상경비출납원인(1.8cm×1.8cm)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인(3.6cm×3.6cm)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3.6cm×3.6cm)
	

※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주무관(620-785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리마한초등학교 공고 제2023-15호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리마한초등학교장

2023년 12월 29일

1. 공인의 등록(재등록)

- 가. 공인 등록(재등록)사유: 오래되어 마멸된 공인을 새롭게 제작 후 등록(재등록)
- 나. 최초 사용년월일: 2024. 1. 1.
- 다. 공인 등록내용

공 인 명(규격)	
이리마한초등학교장인 (2.7cm×2.7cm)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 공인의 폐기

- 가. 공인 폐기사유: 오래되어 마멸된 공인을 새롭게 제작 후 기존 공인 폐기
- 나. 폐기일: 2024. 1. 1.

다. 공인 폐기내용

공 인 명(규격)	
이리마한초등학교장인 (2.4cm×2.4cm)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기타 문의사항은 이리마한초등학교 주무관(830-120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